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6. 11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발 간 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 무 제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정부부처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 현장의 바람직한 연구 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을 통한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올바른 연구의 방향과 해서는 안 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시,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운영을 통한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인식 확산, 〈연구윤리포럼〉 개최 지원을 통한 연구윤리 의식의 함양과 연구자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발간을 통한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 절차 확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연구윤리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지식과 경험도 일정 부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윤리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별, 국가별 연구 문화의 특성에 따라 세부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쟁점도 달라 연구윤리의 일반적이고 표준(standard) 만을 안다고 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궁금증이 증가하면서 개별 연구자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크고 작은 여러 고민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도 않고 선례를 참조해 볼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 고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구자나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례집의 발간을 절실히 요청해 왔었습니다.

본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은 이러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길라잡이가 되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집에 제시된 질문들은 그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접수된 많은 질문들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선별한 것입니다. 이 선별된 질문들을 다시 연구윤리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답변을 작성하였고, 답변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궁금하고 고민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얻기 위해 가까이 두고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응답집이 바람직한 연구 수행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자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유익하게 참조하여 직면하고 있는 여러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 무 제**







CONTENTS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1

연구설계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2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3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

CHAPTER 2

연구수행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6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7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8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9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10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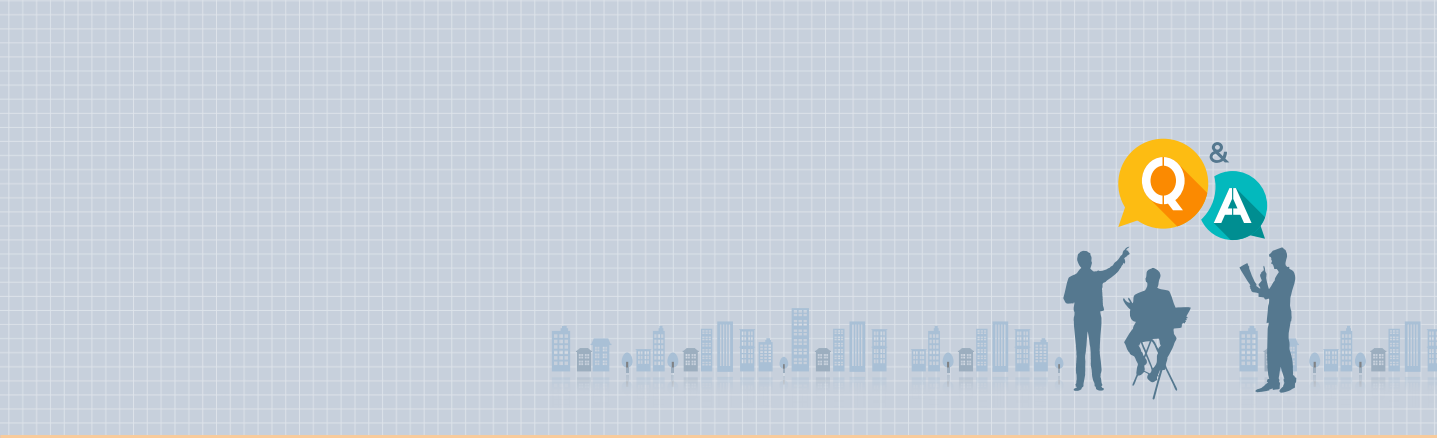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3

11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14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15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17



15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수집한 환자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가? 18

16 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19

17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21

18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22

19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23

20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24

21 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

22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될까? 26

23 이미 나온 연구윤리 책자를 인용하여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27

24 학위 청구논문에 오래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8

25 원저자의 허락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29

26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30

27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31

28 박사학위 논문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먼저 학술지에 발표하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33

29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34

CHAPTER 3

연구발표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6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38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9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41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2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43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44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45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46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48

40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9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50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51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52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54



CHAPTER 4

저자표시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58

46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59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60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61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62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63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64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65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66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68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70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72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74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75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77

CHAPTER 5

중복게재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80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81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82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84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86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87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89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90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 표절인가? 91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92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94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95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96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97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98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99



76 자신의 선행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100

77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수정 · 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101

78 질적 연구의 수행 결과, 연구결과 양이 많아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자 및 방법 등이 동일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102

79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103

80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104

81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되는가? 105

82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한 박사과정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자를 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을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106

83 조사보고서 2권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한 책자를 공저자가 발간하면서 소속 기관과 협의가 없었다. 중복게재인가? 107

84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학술지에 재출판하거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 109

85 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동일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110

86 과제물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써도 자기표절인가? 112

87 출처를 밝혔음에도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113

88 논문의 구조와 형식이 비슷하고 연구 방법과 범위가 같을 때 구조적 자기표절인가? 114

89 ISSN이 있는 프로시딩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게재인가? 116

90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학위논문에서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118

91 학술대회 요약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해도 되는가? 119

92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자기표절인가? 120

93 처음 출판되었던 책의 출처를 표기한다 해도 중복게재 항목의 자기표절이 아닌가? 121

94 본인이 쓴 여러 편의 저널 논문을 정리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122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95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124

96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26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128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129

99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130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131

101 대학 전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133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134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135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36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37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138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140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41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143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144

111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45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6



113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자기표절 및 표절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48

114 중복게재 판정 시 논문의 선후 판단기준은? 149

115 이의신청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맞는가? 150

116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가? 151

117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53

118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154

119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6

120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는가?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법령이 혹시 있는가? 157

121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는가? 158

122 내가 가져다 쓴 타인의 글이 표절로 판정되면, 나도 표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159

CHAPTER 7

IRB

12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62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4

125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65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167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168

128 대학 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0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1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172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3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174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176

134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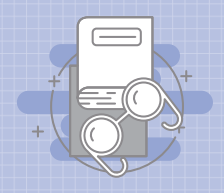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8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179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180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81









CHAPTER 1

연구설계



Q. 1 ~ 3

QUESTION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자신의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연구과제의 참여 연구원이었던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결과 중 일부를 기반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선행 절차 등은 무엇이 있는가?

ANSWER

-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학위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전에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 데이터를 학위 논문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이미 발표되었다는 출처표시를 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다음으로, 해당 연구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되었고, 그 결과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과제 협약에 규정된 해당 지원기관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활용에 대한 범위나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즉,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필요로 하거나 사사표기나 출처표시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 또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학위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 성과의 저자권과 관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신이 참여한 부분만을 사용하거나, 지도교수와 함께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활용하는 내용(데이터 포함)이 이미 발표된 경우라면 그 출처를 적절하게 밝히고 사용하여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4.

QUESTION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연구대상자의 대화를 녹취, 기록하여 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 없이 녹취나 기록이 가능한가? 적절한 연구방법은 무엇인가?

ANSWER

연구대상자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험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인간 대상 연구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IRB를 통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녹음이나 녹화를 수반하는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에는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연구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의해 잘 폐기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녹음이나 촬영을 해야 할 경우, 그 목적이나 절차 및 향후 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동의 과정이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녹음이나 녹화가 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며, 혹시라도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녹음이나 녹화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하며, 그 기록을 파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이나 촬영을 하고, 개인 정보의 익명성 보장을 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적절한 연구방법이 아닐뿐더러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3), 제3조, 제15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69-71.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5.

QUESTION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 수행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공동연구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자원을 가진 연구진들이 특정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협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연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공동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 연구진 각자의 역할과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방법, 논문의 공동저자 결정과 순서, 지식 재산권의 소유권 분배 등에서 공동연구진 사이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므로 사전에 명확히 문서의 형태로 합의문을 남기는 것이 좋다. 특히 공동연구자가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구자인 경우 기관이나 국가마다 연구 관리 체계와 지식재산권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2–189.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8.









CHAPTER 2

연구수행



Q. 4 ~ 29

QUESTION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 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A 연구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B 병원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B 병원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의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 심의를 받아 10여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때 A는 B 병원으로부터 연구 승인 및 연구 데이터의 제공 및 사용 허락에 대한 서류는 획득치 않았다. A와 B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미 발표한 논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NSWER

2013년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전 또는 이후의 사례인가에 따라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A연구자는 B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연구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에 대해 B 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A연구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논문을 발표하였을 경우, B 병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B 병원 또한 A연구자의 연구 수행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IRB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해당 학술지에서 IRB 심의를 받았다는 증빙을 요청한다면 정상적인 심의 결과의 제출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저널로부터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저널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여 게재 철회와 같은 후속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하며, B 병원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3),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27-2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49-51.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5.

QUESTION 5

타인의 연구 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시중에 출판된 책자에서 신규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자와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연구 수행이 가능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NSWER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특정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사상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사안과 같이 특정의 도서에서 기술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서 기술된 문장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티브로 삼는 것은 해당 도서에 내재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질의자가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법정 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정 허락은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연구 결과물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후속 연구를 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이후 후속 연구의 진행 단계에서 원저자에게 동의를 얻고, 논문에도 밝히는 방법이다. 둘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특별히 인용하거나 차용하려는 바가 없다면, 원저작의 저작물과 별도로 일반화시키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즉 원저작의 저작물이 질의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의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수준이라면 후속 연구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저작물과 후속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 연구자의 연구 방향 간에 유사성이 없다면 크게 유념치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저작자에게 후속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의도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더해진다면, 저작권 측면과 다른 측면(타인의 연구 업적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재사용하는)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작권』, 2009, p. 7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4–39.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0.

QUESTION 6

학술 행사에서 구두 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공개적인 인문학 세미나에서 한 연구자가 독특한 아이디어 및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맨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그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경우 현재의 연구윤리 강령이나 지침 상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포함되는가?

ANSWER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 행사에서의 논문 발표나 토론 및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얻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독특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출처를 적절히 밝혀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때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아 그 아이디어의 소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구두 발표를 함께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녹음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원 소유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구두 발표로 알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출처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일반적인 규칙(rule)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 연구는 00세미나에서 얻은 누구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임"과 같이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연구에 기여한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1.

QUESTION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 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 연구 과정에서 설문지를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박사논문에서는 설문지에서 확보한 4가지의 독립변수 중 1가지만을 사용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위의 설문지에서 나머지 3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ANSWER

1회의 설문지 조사를 통해 4개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1개 변인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나머지 3개의 변인에 대해서는 학술지 논문을 통해 발표하고자 할 때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가 질문의 핵심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왜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4개의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발표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이다. 즉, 데이터 수집의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핑계로 여러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에 수집한 후, 변수 하나씩 분석하여 각각의 논문으로 출판하려는 당초의 의도는 아니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독자의 입장이나 한 논문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고려할 때, 데이터를 각각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통합하여 발표하는 것보다 정보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분리(이른바 쪼개기 논문)는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고려사항에서 충분한 정당화가 가능하다면, 각각의 논문에서 활용한 변수가 다르니 데이터 내용이나 이에 대한 분석, 논의 및 결론 등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의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은 동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활용되었고, 이후의 학술지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므로 먼저 사용된 데이터나 관련 내용에 대한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와 나중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 간의 연계나 차이 그리고 동일한 샘플링에서의 다른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등을 기술한다면 독자들은 두 개의 논문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2.

QUESTION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던 동료가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렇지만 동료는 무단으로 복사한 데이터를 아직 사용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타인의 연구 데이터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ANSWER

연구 자료라 함은 연구자가 조사 차원으로 수집한 타인의 자료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이 정리 또는 작성한 자료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각각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편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자 본인의 자료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복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서 표절에 해당된다.

질문에서 보듯, 본 사안은 비록 무단으로 데이터를 복사해 갔지만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연구윤리의 측면에서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위반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에 의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3.

QUESTION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설문지는 한 번에 돌렸는데 설문을 응답한 대상자를 나누어 결과를 정리하여 따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설문 결과를 이번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결과, 다음에는 중학생에 대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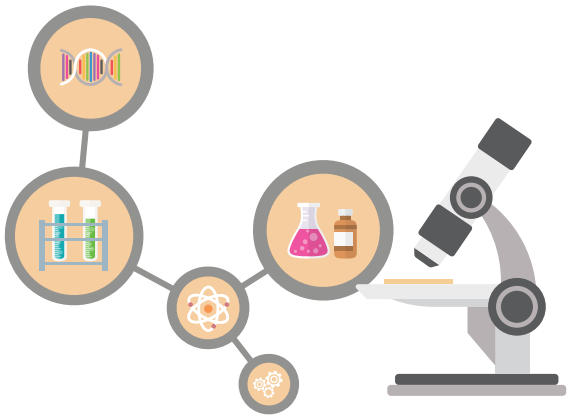
본 사례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이슈는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 **중복게재** :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 또는 유사한 독자층을 상대로 선행 저작물의 출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자기표절,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자기표절**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목적이나 논리 전개 등에 맞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맥락에 맞게 재해석, 재구성, 비판적 해석 등)하지 않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동일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과 이후의 저작물을 비교했을 때,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기 곤란할 정도로 거의 또는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같은 설문지를 바탕으로 했지만 대상이 다른 두 논문이 내용상 유사성이 적으면서 개별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면 두 개의 논문이 중복게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만약 후속 논문에서 일부 이전 논문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인용과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중복게재의 유형 중 쪼개기 출판(salami publication)이 있는데, 이는 연구수행 후 하나의 저작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성을 가지고 여러 논문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논문이 두 개로 나누었을 때보다 하나로 출판되었을 때 더 일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종합하여 보자면, 만약 본 사례에서 같은 설문 항목을 두 개의 대상(초등학생, 중학생)에게서 확보하여 같은 연구 설계, 내용, 결론 등의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면 개별 논문의 가치가 있을지가 중요하며, 고의로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작성되어진다면 중복게재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학문 분야별 기준이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후속 논문의 투고 시에 이전 논문을 언급하면서 관련 설문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해당 학회에 알리면 학회에서 논문 심사 시에 유사성 판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두 논문 간의 유사성을 배제하고도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단순히 동일 시기에 수집한 설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학회에 알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개별 논문으로의 분리 출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 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 결과 만드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NSWER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나 규칙을 연구윤리라 하고,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하거나 올바르지 않는 행동들을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연구부정행위라고 정의한다. 목격한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마치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발표하는 위조, 일부 데이터를 골라내거나 값을 변형시키는 등의 행위를 변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료 연구자의 부정한 연구행위에 대해 직접 동료 연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하거나 혹은 지도교수에게 제보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건전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을 제보자(whistle blower) 혹은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비록 국내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보자가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지만, 동료 연구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해당 부정행위의 개선 등이 목적이라면, 서면을 통한 무기명 제보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에 해당 사실을 정식으로 제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는 해당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대학원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5–189.

QUESTION 11

민간 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해당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내용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ANSWER

민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과제에서 연구 책임자의 가족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연구윤리 지침의 적용 범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다. 일단 과제 책임자의 자녀는 어떤 형태로든 해당 과제에 무조건 참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얼마나 자녀가 해당 과제에서 연구원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체나 위탁 산업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연구 과제 수행 가이드 (인력구성 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직계 가족을 연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거나, 연구에 참여시킬 경우 유의 사항 등이 관련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 관련 지침의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규정 등에 제약사항이 없고, 실제로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연구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해의 충돌의 가능성이나 연구비 유용의 가능성을 가지는 만큼, 과제 책임자가 이해의 충돌을 회피하여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9.

QUESTION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에 출판한 논문 등의 연구 성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ANSWER

논문이 투고된 시점이 과제 시작 전이라면 논문의 연구 내용은 그 과제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과제이므로 해당 과제의 성과물로 판단할 수 없다.

연구 성과를 제출한 연구자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만일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면 삭제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만을 포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0.

QUESTION 13

지도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도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여 수령한 인건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NSWER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정식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개인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업무의 역할과 그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해 사업 계획서와 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종료 후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가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라 요청할 때는 그에 합당한 공식적인 이유를 가져야 할 것이며, 임금 반환을 위한 요청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원 기관 혹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 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지도교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소속 기관의 연구협약 및 연구비 관리 부서 등의 담당자나 해당 연구 과제를 관리한 전문 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1.

QUESTION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지도교수가 석사과정생을 졸업시키기 위해 박사과정생인 모 씨의 연구 데이터를 넘겨줄 것을 강요하여 데이터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하였고, 해당 석사과정생은 양도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사항인가?

ANSWER

다른 학생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한다. 지도교수의 경우는 타인에게 연구부정행위를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록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지도교수는 제자가 연구자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및 논문 작성,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도해야 한다. 아무리 제자를 위한 명분일지라도 다른 제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자로서 부도덕한 행위임이 명백한 연구 결과의 부당한 이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45–250.

QUESTION 15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수집한 환자 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가?

의과대학에서 특정 학과에 소속된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이 아닌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환자 데이터를 포함한 실험 자료를 넘겨 논문을 쓰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는가?

ANSWER

-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수집된 환자 데이터를 공유받아 다른 연구에 활용하고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부 전공이 다소 다른 연구자가 그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논문으로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에 자료의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를 통해 환자 데이터를 재사용한 2차 연구에 대한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152.

QUESTION 16

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 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 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논문에 포함된 사진이 실제 실험모형#1의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 전후 사진을 논문에 싣거나, 실험 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 전후 결과 사진을 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연구 실험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실험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있고, 이 실험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 중 실험 전후의 결과를 찍은 사진을 논문에 게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1) 실제 실험에 사용된(동영상에 찍힌 실험모형#1)의 실험 전후 사진이 아니라, 다른 실험모형#2의 실험 전후 사진이 게재된 경우

2) 실험모형#1로 얻은 실험 결과를 논문에 실었으나, 실험 전후의 결과를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실험모형#1과 동일한 실험모형#2로 실험 전과 후의 결과를 만들어 사진을 찍은 경우

각각 1항과 2항의 경우, 이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ANSWER

- 내용으로 보아, 아마 실험 전의 사진은 실험 준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험 후의 사진은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논문을 출판하기 이전이라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논문 내용에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의 게재와 함께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어야 할 것이다. 즉, 그 결과는 어떠한 실험 조건과 실험 과정을 거쳐 무엇에서 얻은 것인지를 문자로 설명해야 한다.

- 실험모형#1과 실험모형#2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논문에 설명하는 내용(실험 조건과 실험 절차)은 실험모형#1에 대한 것으로 하고, 결과를 표현하는 사진은 실험모형#2에 대한 것을 게재하면서 실험모형#1의 결과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연구부정"의 요건을 가진다.
  - 논문에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진은 일치해야 한다. 실험모형#2의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면 그 사진을 게재하고 실험 조건과 절차를 실험모형#2의 것으로 설명하여야만 한다.
  - 연구부정의 예를 알아보자. 측정 data point를 10개 만들어 내는 경우, 2개의 측정 data가 예상에서 벗어난다고 하자. 이때 그 2개 point는 배제하고 8개 data만 표시하는 것도 "데이터 조작(변조)"에 해당된다. 원칙대로 하려면 그 2개 point도 논문 내용에 포함시키고 왜 예상을 벗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논문의 내용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 요소(논문의 최종적 결과)라면 더욱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 실험이 어렵거나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여러 가지 실험 모형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 실험모형#1과 실험모형#2가 각각 불완전하지만 두 실험의 결과를 통합하면 하나의 성공적 실험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본 질문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를 통합할 경우 연구진실성(충실성)에 흠이 생기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17–118.

QUESTION 17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연구자 A와 B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때 공동연구에 참여한 A와 B가 각자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공동으로 얻은 결과를 서로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활용하여도 되는가? 만약 어느 한 연구자가 먼저 그 데이터를 포함시켜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 다른 연구원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ANSWER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연구 주제와 목적이 다른 논문을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은 각각이 그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충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료의 중복사용 혹은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각 논문에는 연구 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 등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개재되었다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 시에 해당 학회 편집인에게 선행 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18

이공계 연구 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이공계 연구 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ANSWER

- 이공계 연구에서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experimental section 부분과 상당한 부분을 동일하게 기술한다 하더라도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절 검색시스템에서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문장의 유사도를 검색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9.

QUESTION 19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A 연구보고서의 "기술 개발 결과"에 인용표기만 있으면 기존의 자신 또는 타인의 B 연구보고서 등에 발표되었던 "연구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표절(부당한 중복게재) 또는 표절이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도 아닌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기존에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보고서에서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인용표기)만 한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논문이나 보고서로 이미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한다면,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말한다. 중복게재도 이미 발표된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의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타인의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가져다 활용했을지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즉, 자신의 것이 부수적이고, 가져다 쓴 타인의 것이 주된 것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을 하였다면,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고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였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후의 저작물이 독자적인 연구 성과로서의 가치를 가진 부분이 없을 때는 '출처를 표시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어 문제가 된다. 즉,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활용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뭔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절과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이나 자신의 중요한 이전 연구 성과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48–249.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6, pp. 156–157.

QUESTION 20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논문 작성 시, 논문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먼저 제안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즉, 혹시나 있을지 모를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서 선행 연구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이 중 몇몇 사이트를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또, 학술지 논문 사이트에는 석사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나오고, 어떤 논문들은 원문 보기가 불가능하고, 학사 논문은 나오지 않는데, 학사 논문이나 원문 보기가 불가능한 논문들, 다른 개인적인 홈페이지에서의 아이디어 등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중복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먼저 자신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 타인의 선행 연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망라하여 리뷰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분야마다 연구자들이 믿고 많이 활용하는 학술지는 관련 학문 공동체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종종 정보검색 종합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연구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의 졸업 논문은 해당 학교 도서관이나 웹 상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자신의 연구에서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함으로써 내 것과 타인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55–257.

QUESTION 21

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B논문을 읽었는데 '이것은 그것이다 [A]'라고 써진 한 문장 혹은 문단 전체에 대하여 인용을 하고 싶은데, B저자가 인용한 [A] 논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B저자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인용을 할 때도 B논문을 인용했다고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또한, 저는 건축이나 디자인이 아닌 화학공학 분야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을 넣고 싶은데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거나, 혹은 화질이 안 좋아서 다시 제가 직접 그리고 싶은 경우에 다시 그린 그림에 인용한 논문의 출처 표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화질의 그림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ANSWER

1차 인용자를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으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원문을 연구자가 독해할 수 없어 1차 인용자가 직접 번역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재인용 표시 방법도 학문 분야별이나 학술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문헌이나 외국문헌 모두 인용 연구논문의 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제시한 뒤에 쉼표(,)를 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이라는 표기없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서지정보를 그대로 기록한다. 예를 들면, 연구윤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김하늘(2015, p. 13)이 ……라고 하였다(홍바다, 2016, p. 35, 재인용). In Lee's argument (as cited in Kim, 2016) it is found that…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연구물 속에 있는 그림이나 표, 사진 등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원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원저자의 그림이나 표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할 때에도 원본의 출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수정되었고 연구자의 어떤 견해가 포함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49.

QUESTION 22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될까?

제가 작년 여름까지 1년 정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고, 그때 근무 경험을 정책학 박사논문의 일부(3파트 중 1 파트)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과거 일하면서 제가 기록했던 개인적 일지와 팀장 회의 자료 등을 논문에서 인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때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네요. 인터뷰는 지금 다시 할 생각이기 때문에 IRB가 필요하다면 받으면 되는데 당시 기록과 회의 자료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후에라도 그 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면 좋을 텐데요.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문제가 그 기관이 해산하고, 다른 기관이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인수받은 그 기관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ANSWER

- 공공기관에 근무할 당시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이 회의 자료에는 비공개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며, 당시 기관이 가진 규정에는 회의 자료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누구에게 허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근무했던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인수되었다면, 인수한 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4–275.

QUESTION 23

이미 나온 연구윤리 책자를 인용하여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하는데, 기초내용을 [2014] 학습윤리 가이드북, 가톨릭대학교 학습윤리, 한동대 학습윤리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북에 "본 책자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는 원저작자를 표기해야 하며, 본 책자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제작된 책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운을 받아가도록 하여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NSWER

연구윤리교육과 같이 공익을 목적(비영리 목적)으로 이미 출판된 책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편집의 창의성이 가미되어 재구성한 책으로 만들어 활용하거나 또는 거의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여(원본에서 명시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문구 포함)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만일 거의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원저자나 기관에서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5–239.

QUESTION 24

학위 청구논문에 오래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제가 석사학위 청구 논문에 그림을 넣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조선시대 민화나 문화재 사진이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저작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그냥 사용해도 된다면 출처 표시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책에 나와 있는 유물이나 문화재 사진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출처표시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없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사진 대부분이 조선시대 것이어서 50년이 넘는 것들 입니다.)

ANSWER

- 저작권 보호 기간(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이 지난 저작물은 공유지식에 해당되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책에 나와있는 유물이나 문화재에 대한 사진을 활용하고자 할 때, 연구 목적의 공익을 위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출처를 밝히면 사용 가능하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5–237.

QUESTION 25

원저자의 허락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설문조사로 진행한 조사연구에서 설문도구 중 1가지가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 연구자가 개발자에게 메일로 사용 허락을 구하였고, 연락이 없어 전화로 구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구자는 책임 연구자와 조사할 필드의 실정에 맞게 항목을 변경하였고, IRB가 통과되어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기존 연구자가 사정상 연구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본 연구를 맡게 되었고 분석을 하던 중 기존 도구와 항목과 측정방법이 수정 보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연구자는 측정 도구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본 연구에 대해 알리고 사용 허가 여부에 대해 재확인하였습니다. 도구 개발자는 구두로 허가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도구가 수정 보완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측정 도구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구두 허가를 하셨던 것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고 양해를 구해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저자의 허락없이 도구를 수정 보완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원저자의 허가를 구하고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연구들은 꽤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NSWER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 척도(검사 도구 포함)가 자신이 개발한 것이 아닌 타인이 개발한 것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여야 한다.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원저작자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기 어렵거나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가 원저작자의 것과 동일할 경우(이때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출처와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화시켰거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된 경우,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되, 내용적으로는 원저작자의 검사 도구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상 원저자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경우에도, 원도구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원도구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표절과 중복게재 Q/A 및 사례 분석 7번”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bwid=354)
(2016년 11월 18일 접속)

QUESTION 26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연구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신의 세미나 또는 강연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논문을 작성할 경우에 세미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야 하는지, 정식 출판된 내용이 없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 자신이 한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단행본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를 다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출처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아직 어디에도 공식 출판된 적이 없고,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면 출처표시 없이도 가능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4–75.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124–125.

QUESTION 27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병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체 유연성을 측정하고자 피험자를 모집 중인데요.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강제적으로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대표를 통하여 내용을 전달 중인데, 정확히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이며 어떻게 유연성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은 채로,

1. 정해준 날짜까지 전원 생년월일, 키, 몸무게 등 정보를 과대표를 통해 제출할 것
2. 5명씩 조를 짜서 방학 중에 하루에 한 조씩 이 대학 병원을 방문하여 오전과 오후 각 1번씩 2번에 걸쳐 데이터 측정 대상으로 참여할 것
3. 각 조가 언제 방문할지 날짜는 조만간 통보할 것임 등이 현재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확연한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일시를 정하여 전원 연구에 참석하게 하는 이 상황이 지금까지 배워 온 연구윤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1. 이 연구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용인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으며
2. 용납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피험자가 될 예정인 학생들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이에 근거하여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는 일반 연구 대상자에 비해 강요, 부당한 영향, 정보 조작 등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더 잘 보호하고 외부 압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학과 교수로부터 연구 참여를 요청받을 때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할 때는 자기 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연구 목적이나 내용을 속여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결정을 하는데 있어 어떤 강요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학생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게 될 연구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발적인 참여 거부로 인하여 학점 등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3), 제3조, 제15조, 제16조.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 35.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35-40.

QUESTION 28

박사학위 논문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먼저 학술지에 발표하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던 중 논문의 일부를 공인된 학술지에 먼저 게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후 박사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중 내용상 60% 정도를 학술지에 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박사논문을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므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데 저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사정 상 학술지에 먼저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관련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출처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쟁점이 되곤 한다. 박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학문 분야의 견해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박사학위 논문을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처를 밝히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동료 심사자의 평가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여기에 발표된 중요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4–7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1.

QUESTION 29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연구윤리 관련 업무 수행 중,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A과제에서 연구 수행 도중 OO특허를 출원하였고, A과제의 연구 성과물로 포함(특허출원 1건)하였습니다. A과제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OO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나, A과제는 이미 종료되어 특허등록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내용을 수행하던 B과제에서 특허등록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고, 동일한 OO특허를 B과제의 연구 성과물(특허등록 1건)로 포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B과제에 포함된 연구 성과물(특허등록 1건)을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만약 위조가 아니라고 하면 연구부정행위의 어떤 항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는지요?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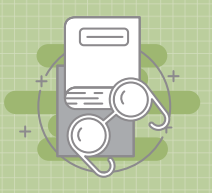
본 질문의 경우 핵심은 A과제 결과로 나온 특허를 유사한 내용의 B과제의 결과로 나온 것처럼 특허 등록을 한 경우에 '위조'에 해당하는가? 에 관한 것이다.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에 의하면,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생성되지 않았던 연구 원자료나 연구 자료 및 연구 결과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A과제를 통해 나온 것을 B과제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보고한 것인 바, A과제의 관점에서 보면, 위조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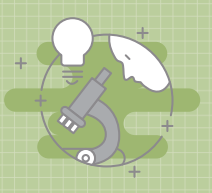
한편, B과제의 관점에서 보면, A과제의 목표나 연구의 중점 등과 비교할 때 얼마나 유사하고 차이가 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A과제의 결과로 나온 특허가 B과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B과제를 통해서는 특허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나온 것처럼 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므로 위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제의 결과로 나온 특허를 B과제의 결과로 나온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57–60.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19–25.









CHAPTER 3

연구발표



Q. 30 ~ 44

QUESTION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A가 박사후 과정 중 SCI급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 B, C, D가 있었음. 이후 E가 A의 논문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을 하여, A의 실험과정을 전부 포함하여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로 C, D를 등록하였음. 이때 참고문헌 등에는 A의 논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논문의 상당수가 A의 논문을 포함하였으며, 연구방법 또한 대부분 일치하였음. 이때 D는 A와 E논문에서 교신저자였음. 연구윤리에 벗어나는가?

ANSWER

- 본 사례에서 먼저 출판된 논문을 '1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A, 공동저자 : B, C 혹은 공동저자 : A, B, C)이라 하고 이후 논문을 '2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E, 공동저자 : C)이라고 하겠다.

2번 논문은 이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1번 논문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을 활용하면서도 각주나(질문에는 각주 표기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참고문헌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각주에도 표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각주에 출처를 표기했으나 참고문헌에 누락시킨 경우,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주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의도적인 명백한 표절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중복게재 혹은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

더욱이 1번 논문과 2번 논문의 교신저자 D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두 논문 간에 유사한 내용이 출처표시 없이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2번 논문의 제1저자인 E에게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가

D를 속이고 했든, D가 묵인하는 상태에서 했든, 이미 게재된 학술지의 연구방법과 상당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의도성이 높은 중복게재 혹은 표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복게재와 표절 여부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번 논문과 2번 논문에 공동으로 참여한 교신저자 D가 먼저 발표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을 다시 사용하고 있음을 출처표기를 통해 밝히고 있는지 또는 1번 논문의 저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출처표시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4.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QUESTION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표절 검색 시스템에서 사전에 심사 과정에서 취소한 논문과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ANSWER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 자체를 취소하였거나,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저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투고하였던 미출판 논문과 후속 투고 논문과의 유사성이 표절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된다.

유사도 검색을 위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이 논문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원래의 논문에서 수정된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 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을 경우 당연히 높은 유사성을 표시해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도가 나타났다고 하여 바로 중복게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이 중단된 논문을 정식 연구 결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자가 이전에 쓴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고, 이것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을 때,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유사한 부분에 해당되는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없을 때는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7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68.

QUESTION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 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연구원은 다른 소속 기관의 B 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후 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 연구원인 B의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하였다. 이후 B 연구원의 업무를 승계한 C 연구원이 해당 연구 내용을 소속 기관의 허락을 받아 보고서 형태로 C 연구원의 이름만을 단독 저자로 하여 인터넷 상에 발표하였다. 만약 A 연구원과 B 연구원이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를 C 연구원이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가? 저자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ANSWER

부당한 저자 표시(Authorship)와 관련하여 표절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만약 C 연구원이 A와 B의 연구 결과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며, 또한 표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A와 B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먼저 연구회에서 발표하였고(즉, A와 B는 발표된 결과물의 저자이며, C는 여기에 저자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 이전이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연구 보고서를 C가 자신만의 단독 이름으로 바꿔 인터넷 상에 발표하면서도 A와 B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출처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A와 B가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는 C가 인터넷에 게재한 보고서를 A와 B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C가 게재한 연구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에 대하여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독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A와 B가 발표하지 않았던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학술 저널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한다면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의 저자표시를 먼저 바로잡아 저자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어떤 연구회에 발표된 것을 보완하여 저널에 투고한 사실을 명확히 저널 편집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이 경우에도 후속 진행 사항을 모든 저자가 협의하여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A는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로 인하여 원저자들이 겪게 될 표절이나 연구 결과물의 침해와 관련하여 우려하기 전에 C의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본인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저자권도 확보하면서 원래의 저자가 표절로 오해받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QUESTION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이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ANSWER

박사학위 논문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최종 인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에 바탕을 둔 논문을 작성하여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일 때, 이를 박사학위 논문에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인쇄와 학술지 논문의 출판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 알 수가 없어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미간행 출판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나 관련 내용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서 중복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상호 언급을 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각각의 논문에서 마치 처음 사용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학술지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인쇄되기 전보다 먼저 발표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박사학위 논문에는 해당 학술지의 관련 내용을 출처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1–272.

QUESTION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학위 논문 심사과정(예비심사와 본심사) 중 심사 대상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문제된 부분을 수정하고 논문 심사를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대학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절차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조치는 사안의 경중과 대학의 자율성과 유관한 문제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대학원생의 경우, 전문 연구자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은 감안되어야 한다.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은 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학위논문 제출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적극 수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면 심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위원들은 학위논문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예비심사나 본심사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논문 심사를 종결하지는 않는다.

학위논문 심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자가 쓴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제출자가 올바른 학위논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또한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논문에서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논거나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제출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절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7.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53–254.

QUESTION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학술지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들이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의 지적 사항을 모두 수정하여 동일 학술지에 다시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ANSWER

학술지의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은 주의 깊고 건설적인 지적을 통해 논문 저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개선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즉 동료 심사의 목적이 질 높은 논문의 출판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연구를 개선하여 학문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논문의 저자들이 편집자와 동료 심사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하여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러한 절차를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사, 학술지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장 판단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음 투고된 논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적절한 동료 심사자들을 통해 통상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8.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15.

QUESTION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A 기관에 소속된 모 연구원은 자신이 주관연구책임자로 B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A기관에 소속된 주관연구책임자와 공동 연구자들을 저자로 등재하지 않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B 기관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ANSWER

공동연구 과제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한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저자권에 대하여 연구 성과의 발표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자권 배분과 관련하여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B 기관의 연구자들이 A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논문을 발표했다면 명백한 표절임과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B 연구기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로서의 조사 또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A와 B, 두 기관이 모두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대화로서 해결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자명을 수정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와 조사 과정은 보통 긴 시일이 소요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연구에 참여한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4.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41.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자권』, 2009, p. 3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 51.

QUESTION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사회과학분야 연구진과 의학분야 연구진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자료에 기반하여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자 간 합의하여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세분화하고 각각의 전공에 맞게 새롭게 접근하여 한편은 사회과학 분야 또 다른 한편은 의학분야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한다. 다만 서론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각각의 분야에 맞춰 선행연구가 사용되어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만 똑같은 연구대상자이다 보니 사용한 척도,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t-test 및 상관관계 등 분석결과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가?

ANSWER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와 목적 및 분석 방법이 다르다면 동일 연구 자료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해도 될 정도의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두 편의 논문이 각각 충분한 학술적 가치 또는 출판의 필요성이 있지 않다면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각 논문에 연구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에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개재되었다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시에 해당 학회 편집인에게 선행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하며 후속 논문에도 반드시 선행 논문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선행 논문과 후속 논문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A 연구원은 모 협회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용역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모 대학의 B 교수는 연구책임자로, A 연구원은 공동연구자로 정부 용역과제를 수행 한 후 정부용역보고서에 이전에 모 협회에 제출하였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A협회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상당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가?

ANSWER

학계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이차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사용 조건은 이전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전 연구결과임을 명백히 밝혀 후속 연구결과물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즉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 필연적으로 선행 연구결과가 필요할 시에는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후속 연구결과물을 접하는 독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내용이 새로운 연구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므로 연구결과를 재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한다. 이는 논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고서나 개인 저술 등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비록 이전 연구결과물에 대해 출처 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연구결과물을 재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가치가 결여되므로 내용이 매우 부실한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이전 연구결과와 후속 연구결과물을 분리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사실 존재한다. 따라서 A와 B연구자가 선행 보고서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모 협회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속 보고서에서 명백히 밝히고 재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여전히 이중게재 및 자기표절의 소지를 가지게 된다.

연구윤리와 저작권은 유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의 판정 주체나 성격이 다르다. 연구윤리는 주로 연구자의 연구성과 발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및 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분야의 통상적인 범례와 상식선에서 판정을 하며,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연구자에 대한 징계로 귀결되며 저작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결과의 소유권의 구별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판정이 주로 이루어진다(표절의 경우에도 법정에서 판정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수용치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7–239.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자권』, 2009, p. 3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70–71.

QUESTION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ANSWER

이공계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연구의 방법이나 데이터가 중복될 수가 있다. 만일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이 먼저 제출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 및 해석이나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이공계의 연구의 특성상 연구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학위 논문 제출 이후에 이와 동일하게 또는 요약 및 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학위논문의 저자인 대학원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4–7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6–277.

QUESTION 40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B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후 A 근무 기관에서 재직 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하려는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ANSWER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수행한 시기와 논문을 발표할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는 실제 연구가 수행된 당시의 기관으로 소속표기를 하고 논문 표지 하단에 저자의 현 소속 기관을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교신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혹은 공저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1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0–191.

QUESTION 41

연구 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1) 연구수행 후 위탁기관에서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논문으로 출판했다. 연구 주관기관에서는 현장 모형 시험 장치를 주관기관에서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이기에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감사의 글을 작성했으며 한두 개 그림에 인용문헌을 달지 못하였다. 표절에 포함되는가?

2) 연구결과의 소유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 작성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가?

ANSWER

- 연구의 수행 전에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내지 계약서에 연구 결과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해당 연구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을 작성한 점이다. 출처표기를 빠트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인용법을 빠트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의적인 중복게재나 표절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인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안내하고, 출판된 논문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해당 학회에 문의하여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확인서로 인한 법적 불리 여부 문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소유와 관련된 법적 사례 등에서는 연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관 연구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1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51–254.

QUESTION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논문 1(게재 승낙 상태)

- 가정: 환경 "A"에서 "B"기법을 사용
  (단, B기법의 세부 종류가 많으므로 분석의 편의상 B기법들 중 B-1 방식 기법을 가정하고 또한 α라는 특성을 갖도록 가정. 타 논문에서 유사한 기법이 고려된 바 없음.)
- 본론: 현상 "C" 분석 및 방법 "D" 제안

논문 2(제출 전)

- 가정: 환경 "A"
- 본론: B-1-α 기법 제안 및 구체화, 해당 기법에 따른 현상 "E"분석

즉, 기 제출된 논문에서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B-1 방식 기법을 사용한다." 정도로 본론을 위한 가정 정도로만 다루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기법 "B-1-α"을, 다른 논문에서 "B-1-α+"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기법 자체만 다루어도 자기표절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래는 논문 2를 먼저 제출한 후 논문 1에서 참고문헌으로 논문 2의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인용하려 하였는데, 연구원들 사정상 논문 1이 먼저 제출되고 출판이 결정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논문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참고문헌 인용을 통해 밝히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등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질문자가 제시한 두 논문은 동일한 환경(A)에서 출발하지만, 이에 적용한 기법이 다르고, 본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로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논문 2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논문 1의 환경 A나 B기법 등 중복되는 중요한 부분이 활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교되는 두 논문 사이에 가설의 일부가 같고, 샘플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 및 해석의 초점이나 방향이 다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중점이나 결론이 다르다면, 그리고 두 논문에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다면 두 개의 논문은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다른 논문이므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화학 분야의 대학 연구자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2월에 발간된 후에 비슷한 주제로 교내 학술연구비를 4월에 신청하여 7월에 그 결과물을 학술지의 논문에 실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석사 논문의 내용입니다.

1. 전반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만, 2월에 졸업 당시부터 석사 1년 차가 같이 일하였고, 결과물을 제출할 7월까지 일부 연구를 1년 차가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 것은 아니고 재현성 차원에서 실험하였습니다.(연구노트 기록)

이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또 다른 하나는, 2월에 학생이 졸업한 뒤에 7월에 논문을 내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교내 연구비를 4월에 비슷한 주제로 신청하고 7월에 결과물을 제출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2월에 학생이 졸업했으니 연구는 완료되었는데, 4월에 같은 주제로 교내 연구비를 신청하고 7월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때에 학생의 졸업 논문을 사용했으니 심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끝난 연구로서 신청하고 결과물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1.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2. 거의 같은 주제로 후임의 석사 1년 차가 2월부터 7월까지 계속 연구한 경우(연구노트에 기록)라면, 졸업한 학생의 단독 연구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ANSWER

통상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제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주제로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출할 것이 기대된다. 새로운 주제로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학위논문으로도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비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처럼, 학위논문을 통해 이미 어떤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고, 이와 비슷한 주제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그 결과물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이 학위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면, 연구비 신청 때부터 새로운 주제에 대한 기획이 아니고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일 다른 석사 1년차가 이미 나온 학위논문의 내용과 거의 같은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미 나온 학술지 게재 논문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것이 없었다면 연구 설계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7.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56.

QUESTION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에 졸업 이후에 국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저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졸업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시작과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을 수행하여 2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종료되어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였지만 아직 논문은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와 공동연구도 진행하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으로 연구한 결과를 졸업논문으로 사용한 후에 졸업 이후 국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박사과정 중에 저는 활성 산소나 혈류량 분석에 대하여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졸업 논문을 새로운 기법에 대한 리뷰지 형식으로 쓰고 싶은데요. 학기 중 연구한 각기 다른 주제들을 갖고서(총 4가지 연구) 졸업 논문을 리뷰지 형식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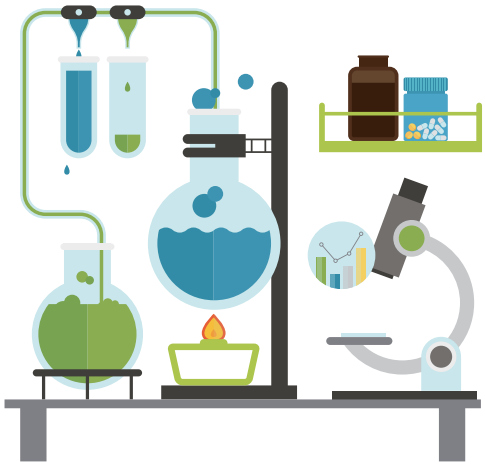
3. 리뷰지에 들어가는 주제들은 각각 다른 국외 학술지에 투고하려고 하는데요. 졸업 이후 졸업 논문에 사용한 각기 다른 주제의 연구들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공계에서는 학위과정 중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위논문에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학위논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국외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만들 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가의 여부는 관련 학문 분야에서 학위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에 따라서 또는 해당 학술지의 학위논문을 활용한 논문 투고에 대한 출판 정책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타당한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학위논문도 PDF로 전환되어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위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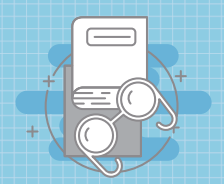
박사학위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써서 제출하느냐의 문제는 해당 대학의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따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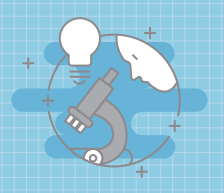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77.









CHAPTER 4

저자표시



Q. 45 ~ 59

QUESTION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학위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때 지도교수로부터 학술지 논문을 먼저 출판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다.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를 원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이 생각하기에 지도교수는 중간 검토 및 코멘트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신저자를 부여할 경우 향후 자신이 단독으로 디자인 출원 등을 할 때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논문에 저자권을 부여할 경우 후속 저작권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ANSWER

논문 저자 자격과 저작물의 권한과 관련된 사례 중 하나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많은 대학들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당한 저자 표시란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거나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지도교수가 저자 유형 중의 하나인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교신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논문 투고 과정에서 학술지의 편집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논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도 독자로부터 오는 질문이나 코멘트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응답할 책임을 갖고 있다.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분쟁(authorship dispute)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의 목표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저자의 역할을 나누고 이에 맞는 공로배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 국제적인 관행이다. 즉, 연구 참여자 간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저자의 역할과 순서를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 관해 지도교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한다. 논문에서 저자권을 인정하였다고 무조건 후속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질 수는 있다.

저작물 관련 저자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수행 및 결과물 발표 전에 논문과 후속 저작물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 및 역할, 결과물의 소유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46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ANSWER

포스터 발표에서의 교신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도 무조건 교신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터 발표 이후에 후속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자마다 기여한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또 후속 논문에서의 교신저자가 합의에 의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에서 누가 교신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 논문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스터 발표에서 기여한 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는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후속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포스터 발표 내용과 후속 논문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요한 차이에 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여 그가 새로운 저자로 등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 발표에서 교신저자인 사람이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논문에서 당연히 동일하게 교신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타 기관으로 이직한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가 책자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 집필진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원 B는 A기관에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ANSWER

본 사례의 핵심은 B 연구원이 A 기관에 근무할 때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저자권을 부여할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있다.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연구 주제 선정 및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 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다면, 비록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저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보고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저자 변경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여부이다. 사전에 저자권을 가질 만한 모든 저자들과의 협의 없이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자신이 기여한 역할에 대하여 정당한 업적 배분을 받아야 하며, 만일 저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했음에도 그 업적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A기관에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0.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7–41.

QUESTION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대학 교수이면서 공공기관장을 겸하는 연구자가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은 논의 과정에서 논문 제목 등의 코멘트 외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자신을 제1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다. 다른 공동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ANSWER

부당한 저자표시는 저자로서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자에서 배제시키거나 저자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연구의 주제 설정(중요한 아이디어 제공)과 실험 등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해석, 논문의 초고에 대한 학술적으로 중요한 코멘트, 논문의 초고 집필과 이에 대한 리뷰 및 승인 등을 해야 저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장은 논문 제목에 대한 코멘트 이외에는 실제로 논문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럼에도 제1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혹 이 연구를 위해 해당 기관장이 연구비를 수혜 받는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이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연구비 수혜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 제1저자가 아닌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을 통해 그 감사함(고마움)을 표시해도 된다.

만약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학술지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논문 출판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각 저자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한 악영향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치할 경우 정당한 연구 업적을 가져야 하는 연구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묵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지가 자율적으로 올바른 저자표시의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해야 한다.

학술단체나 출판사가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또 이러한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어떤 예방 조치나 제재를 취하지 않을 때,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이의 제기나 제보 등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저자권의 인정 기준, 심사 위원의 저자 인정 여부, 자료 수집한 공동 연구원의 인정 등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해당 논문에 실질적인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이 논문의 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저자인 학생과 이를 지도한 지도교수가 그 기여도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학위논문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학술지에게 게재할 때 지도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은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일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의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롭고도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이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 그에 맞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도 그 역할이 단순히 설문조사에서의 자료 수집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서의 실질적 기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저자의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이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새로운 분석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같은 제목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려고 한다. 포스터에서는 공저자로 등재되었으나 자료 수집, 분석, 내용 정리 및 결론, 제언 등 모든 과정의 대부분을 주도하였다. 포스터의 교신저자는 해당 내용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할 의사가 없다. 이때 포스터의 교신저자를 제외하고 학술지 논문의 교신저자로 논문을 투고 할 수 있는가?

ANSWER

이 경우 우선적으로 포스터 논문의 교신저자와 저자권에 관련한 공식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공동 저자의 주도하에 새로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단독 투고하고자 하는 의사를 기존 교신저자 및 모든 저자에게 전달하고 단독 투고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면, 단독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교신저자는 대부분 지도교수이거나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높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 발표 시에 교신저자로서 등록이 된 이후 후속 논문의 수행 및 투고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기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를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자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저자권 이슈는 연구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간에 생기기 마련이므로 상당히 예측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해명 및 규명 등이 어려우며, 학생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특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논문의 작성 방향과 저자권 관련 사전 동의를 얻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 동의만을 믿고 진행하였을 경우, 향후에 당사자의 입장이 바뀔 경우 저자권 협의 과정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해당 학회에 후속 논문이 포스터 발표에서 사용한 연구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포스터 발표와 중복되는 부분의 경우 인용을 하거나 참고문헌의 기재 및 출처 코멘트 등과 관련한 조치를 해당 학회와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작권』, 2009, p. 47.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72–73.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8.

QUESTION 51

선행 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 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 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공동연구 참여자 A, B가 후속 연구에서 B가 연구책임자, A가 참여연구원이 되어 선행 연구 결과를 재사용한 가능한가?

ANSWER

A, B의 두 연구자는 모두 저자(Author)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 간에 후속연구에 대한 연구의 수행과 관련한 역할을 정하고, 저자권 관련 협의를 하였다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 연구에서의 기여한 정도라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달리 연구에 참여하는 역할과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하여 저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6.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A는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한다. 그런데 논문 작성 과정 중 특정 물질에 대한 간단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여 이를 같은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 B에게 부탁하여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논문에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학원생 B는 단순히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뿐 A의 논문 초고 작성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진행 과정 중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때 B는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ANSWER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s Editiors, ICMJE)에서는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거나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둘째, 논문 초안의 작성에 관여하고, 셋째,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투고를 승인해야 한다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연구에 다소 기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적는 것이 적절하다. 논문의 저자는 그 논문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데이터의 생산 과정, 방법, 그 해석 및 그 가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논문 초고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실험의 목적을 인식치 못한 채 데이터 측정만을 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B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사의 글'에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4–19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94–195.

QUESTION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에서, 저자를 부여한 자가 연구부정행위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ANSWER

-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문제된 논문의 모든 저자이다. 따라서 일단 교신저자와 선물저자(혹은 명예저자) 모두 피조사자가 되며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피조사자의 책임 범위가 결정된다.

부당한 저자표시는 일반적으로 연구 책임자인 교신저자가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교신저자가 선물저자의 동의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은 100%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저자가 된 명예저자가 교신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저자자격을 부여받았다면 명예저자도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저자로서의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부당한 저자자격을 먼저 요구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저자표시를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 책임자인 교신저자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게 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3.

QUESTION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 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저와 20여 명의 저자는 최근 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저자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group authorship형식으로 투고를 했습니다. 논문의 title page에는 그룹명을 쓰고, 논문의 뒷부분에 저자의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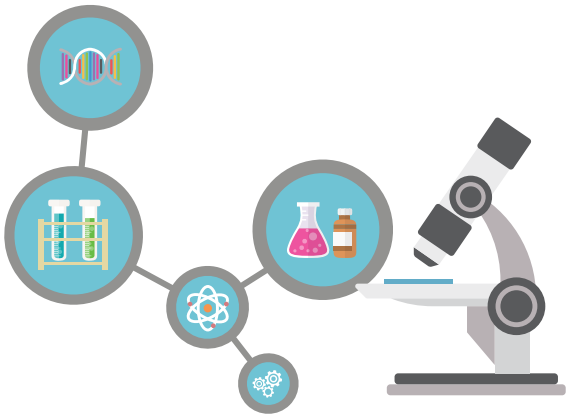
그런데 학술지 측에서 저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룹명을 저자로 하고, 실제 저자 이름은 저자로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순희, 이철수, 홍길동이라는 저자가 '한국문화재단'이라는 그룹 저자명으로 논문을 투고했는데 학술지 측에서는 이 논문의 저자를 '한국문화재단' 이라고만 등록시키고 김순희, 이철수, 홍길동 각각의 저자는 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에는 어이없게도 한국문화재단이 학술지 측에 저자들을 인정하지 말도록 하라는 외압이 있었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각각의 저자를 저자로 인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학술지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논문을 작성해 놓고도 저희 저자들의 이름으로는 논문이 검색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학술지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요?

ANSWER

학술지 논문에서 저자 표시는 저자의 업적 인정과 연구의 과정과 내용에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논문 표지에 그룹 저자명이 나오고 논문 뒤에 저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실제 논문에 기여한 저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업적 배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외압에 의해 학술지 측에서 각각의 저자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룹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학술지 나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해당 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저자들의 저자 표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이러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학술지를 발행하는 편집위원회 내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1.

QUESTION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대학 강의를 나가던 학교의 중국인 대학원생의 연구 논문을 그 학생과 제가 공동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논문을 처음 진행하게 된 시점에, 당시 저는 그 중국 학생 본인이 한국 말이 서툴고 논문 작성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저에게 교신저자로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의뢰받았습니다.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한 본인의 역량을 벗어나 지도하기 힘들다는 소견과 부탁을 받아 저와 중국 학생이 단 둘이 논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학생이 작성한 한국어가 엉망인 논문의 완성도는 약 40% 정도였으며, 그 논문을 가지고 제가 수정한 다음 어느 한 학회에 논문 심사를 의뢰한 결과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중국인 학생의 SOS를 받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하였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한국어 실력과 논문 작성 실력에 신뢰가 쌓이질 않았고, 그 학생에게 맡겨 놓으면 논문이 완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가 스스로 혼자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 80%의 전면수정을 거쳐, 이번에는 결국 다른 학회에 중국인 학생을 주저자로, 저를 교신저자로 하여 논문 투고하였습니다. 이후 그 논문은 '수정후 게재' 판정이 나왔으며, 교신저자인 저 혼자의 수정 과정을 거쳐 논문 심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제야 논문이 거의 완성 단계, 즉 '게재 가' 판정이 나올 시점인데, 갑자기 그 중국 학생의 지도교수가 본인을 중국 학생의 지도교수라는 명목으로 저자 삽입 및 논문이 거의 완성된 이 시점에 갑자기 연구에 참여하여 공동저자로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 교수는 제가 논문을 투고한 학회에 전화를 하여, 투고 논문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논문 파일을 달라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저를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학생의 지도교수가 논문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메일 내용 및 수정 진행 상황의 메일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문이 통과될 시점에 저자 추가 삽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 또 어떻게 연구윤리 위반을 제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싶습니다.

ANSWER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즉,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제공, 데이터 수집/분석/해석, 논문의 초고 작성 및 중요한 부분의 교정, 투고 논문의 최종본에 대한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질문자의 사례를 보면, 중국인 학생의 지도교수는 현재 질문자가 투고하여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저자로 넣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종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당한 강요에 의해 해당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므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연구부정행위의 공모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되게 하는 것도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즉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단 그 지도교수에게 부당한 저자표시의 강요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명하게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하며, 만일 그럼에도 여전히 강요가 지속된다면, 그 지도교수가 속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7.

QUESTION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본인은 2011년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석사과정을 밟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졸업을 하였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경 어떤 강의를 수강하면서 수업 과제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후에 저의 지도교수님이 된 교수님과 함께 그 내용을 발전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론과 문헌연구, 연구 문제까지 제가 집필하였고, 일부분 교수님이 문장 등을 수정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실험물인 설문지는 제가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리서치회사에 의뢰하여 획득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결과 값을 SPSS로 돌려 표로 정리하였고, 교수님은 연구결과와 결론은 본인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졸업 학기인 2013년 상반기, 교수님은 ○○○○○○에 저를 제2저자로 하여 논문 투고를 신청하셨다 말씀하셨고, 저 역시○○○○○○로부터 2013년 6월 14일 논문 투고 증명서를 메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거의 일 년이 지나도 이 논문을 학술지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졸업 후, 교수님과 왕래가 없었으며 교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메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썼던 논문을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없어 논문이 채택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10월 25일) 학술지에 등재하기로 약속했던 논문이 ○○○○○○○가 아닌 ○○○에, 교수님의 이름만 올라간 채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권 및 표절에 관해 공동저자로서 저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적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논문을 수정하며 주고받은 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판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후, 교수님께서는 제 논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제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문에는 저의 이름이 앞에 있었지만, 저는 교수님께 학술지 게재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작자와 협의 없이 무단 게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학술지 게재 논문이 석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거의 그대로 혹은 보완한 것인지, 아니면 학위 논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질문자가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저자로 등재되어 업적 배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저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진 질문자를 저자로부터 배제하고 지도교수 단독 저자로 등재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질문자가 해당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음에도 저자가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도교수가 속한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모아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제보를 하는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7.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1.

QUESTION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여쭤보려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 저자가 주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논문 저자가 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갑자기 교신저자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요약, 정리되어 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저자의 위치가 뒤죽박죽되고 아마도 지도교수와 개인적 교분이 있는 타 대학 교수가 뚜렷한 기여 없이 교신저자로 들어오는 경우에 정당한 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교수직을 가진 사람들은 각 대학에서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더욱이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 문제를 연구윤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바람직한 저자표시는 학위논문의 저자인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학위논문에 근거를 두었지만, 학위논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그 다른 부분이 지도교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면, 그리고 이 다른 내용에 관한 역할 수행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 배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지도교수 또는 다른 사람이 그에 맞는 저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의 사례는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단지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하는 것 이외의 저자표시는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7.

QUESTION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이과 계열의 공동연구에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투고할 때, 지도교수가 아니더라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연구에 참여했음에도 지도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저자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배제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연구재단에서 발주한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그 논문을 발췌하여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들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부디 관련 학계나 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 11. 3)〉은 "지도교수가 단독으로, 또는 학위논문의 저자가 아닌 제3자가 제1저자(주저자)로 학술지 등에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위논문과 거의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요약 내지 발췌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여 게재할 경우, 해당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학위논문의 저자로 보기 때문에 그에게 제1저자(주저자)로서의 업적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학위논문에 기반을 두었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학술지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 또는 제3자가 그 의미 있는 차이에 대하여 실질적 역할을 하였고, 그것이 제1저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 학술지 논문에서 이에 부합한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타당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주거나 저자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저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속한다는 점이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요약 내지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라면, 학위논문의 저자나 지도교수가 각각 제1저자 그리고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외의 경우, 즉 제3자가 제1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이에 합당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자격에 대하여 국제의학학술편집자위원회(ICMJE)에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학문 분야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는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자
나) 논문의 초안을 만들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을 한 자
다) 출판될 논문 최종본을 승인한 자
라) 해당 논문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부록1), 2008.

QUESTION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저서를 발간할 시 하나의 저서 책자에 챕터별 저자가 있을 때 실적 등록 기준은 저서 전체의 챕터별 저자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지 각 챕터별 실적을 분리해서 등록을 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서 한 권의 챕터별 저자를 모두 더하면 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자 한 분이 챕터 실적을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은 저서라 함은 저서 1권당 저자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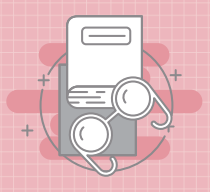
ANSWER

- 공동 연구의 경우, 저자 표기의 순서는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에 따르되,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제1저자로서 가장 먼저 오게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서를 출판했을 때 업적 인정은 소속 기관의 업적 인정 방법이나, 인정율에 따르면 된다. 한 챕터의 저자가 해당 챕터의 실적을 등록하고자 할 때, 출처표기 방식은 “book chapter의 저자명(연도), book chapter 제목, 단행본의 (편)저자명, 단행본 제목(book chapter의 페이지),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면 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 APA 출판 매뉴얼(2015)









CHAPTER 5

중복게재



Q. 60 ~ 94

QUESTION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파트 타임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이전에 총괄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ANSWER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연구보고서의 재사용, 재출판 등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자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활용과 관련한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에서 사용 가능한 과제여야 한다.

둘째. 저자권의 문제다.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재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내용을 학위논문에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면 이는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권을 갖춘 상태에서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새로운 연구 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경우 중복출판 및 자기표절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연구보고서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활용하고 추가 연구를 통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학위논문으로의 작성이 가능하다.

최근 연구보고서의 논문 제출 시 중복출판의 문제로 인하여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의 상황과 관련한 지도교수의 조언을 구하거나 논문 작성법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심사가 완료된 학위논문을 학위수여식 이전에 일부 수정하여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또 이때 게재가 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NSWER

국내 · 외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활용한 해당 학위논문에 대하여 출처를 밝혔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학술지의 peer reviewer나 편집인이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를 승인했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후 저작물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하였고 초록집에 실린 바 있는 연구내용을 추후에 정규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NSWER

학술대회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할 당시 제시하였던 자료와 그림은 추후에 본인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술대회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해도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학문 분야의 관행이다. 왜냐하면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는 아직 검증받지 아니한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에 대해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예비 보고의 형식으로 보여 주어 이의 타당성을 묻는 연구 활동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록은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출처표시 없이 활용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분야와 학술지에 따라서는 학술대회에서 사전에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에 그대로 혹은 간추려 게재하는 경우, 논문 투고 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후속 논문에서는 출처표시를 하여 중복사용한 사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학회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초록을 정규 학술지 논문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의 2차 출판 혹은 재사용과 관련한 지침이나 학계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후속 논문 발표 시에는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연구윤리 위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각종 학술대회의 포스터에서 사용한 연구 데이터를 후에 학술지 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여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문의하거나 출판 매뉴얼을 확인하여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 통상 선행 연구와 겹치는 중요한 데이터나 해석 및 논점 등을 재활용하는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해당 학술지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편집인이기 때문이다.

중복게재가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므로,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는 먼저 발표된 것이 공식적인 출판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의 프로시딩에 이미 발표된 데이터나 중요한 연구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활용할 때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판단은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의 프로시딩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연히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간주되면, 여기에 있는 자신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학술지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또 한 가지는 최근의 학술 논문의 출판 환경을 고려해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여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학술대회의 자료를 모아놓은 프로시딩 등은 과거와는 달리 누구라도 쉽게 접근 및 인지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후속 연구물을 출판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정당한 재사용이라는 연구윤리의 원칙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미 발표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부록1), 2008.

QUESTION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국내 대학원에서는 학위과정 중 출간된 학술지 논문을 종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미 출판된 논문의 경우 해당 학회에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자신의 학위논문이라 하여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했다면 해당 학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ANSWER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하거나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재출판 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 학계에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논문이 극히 드문 학문 분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성격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위논문은 학생이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지 논문은 전문 연구자로서의 연구 성과를 학계에 알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성격이 더 강한 차이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독자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논문의 선후 관계를 떠나 이 두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의 요건들이 학술지 논문 간의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요즈음에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 재출판을 허용할 지라도 투고자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표시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행 논문을 출판하면서 해당 학술지 등에 저작권이 위임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실제로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 출판 시 동의서에 저작권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논문을 재사용하여 재출판 또는 이차출판(secondary publication)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의 권리로서 선행 논문을 출처로 하여 재출판 하는 사실을 밝히거나, 선행 논문을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저자권자로서의 저작 인격권은 저자가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학위논문의 제출 이전에 학술지 논문을 필수적으로 출판하도록 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유들로 연구 결과를 학위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이전 연구 결과를 중복하여 사용하려는 의미보다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인정받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에 재출판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선행 및 후속 학술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논문의 재출판 후에는 연구자로서의 연구 성과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의 차이점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두 논문 간의 재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허용되는 출판 형태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중복게재의 경우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안의 특성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참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 중복게재에 포함하지 않는 유형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 · 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연구원 본인이 작성하여 발간한 연구보고서 챕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투고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하여 출판할 수 있는가?

ANSWER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학술지 출판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복게재와 관련한 가이드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제5조 2항과 6조 2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중복게재를 피하려면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관 내 연구보고서와 학술지의 독자는 일부 겹치기는 하겠지만 구분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제한적 독자군으로 인하여 정식 연구 성과로 인식하지 않는 학문분야도 있음) 따라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한 이후, 연구보고서를 출처로 표기하고 논문을 투고하고, 학술지의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연구보고서의 논문 출판을 위해서는, 기관 내 연구보고서의 외부 출판이 가능한지? 출판에 따른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소속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소속을 가진 연구자의 연구업적(연구보고서)은 소속 기관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속 기관으로부터 연구 성과의 외부 출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출판 관련 허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논문의 투고 시에는 해당 학술지에 어떠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논문의 심사 시 관련 내용을 학회에서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의 외부 재출판 관련 가이드가 없다면, 연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 성과의 개별 인정 기준 등도 제정하여 연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복수의 연구 성과가 생긴 경우에는, 보다 이득이 되는 연구 성과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복수의 연구 성과 모두를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연구의 선후 관계나 중복출판, 2차출판 정보를 함께 표기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중복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내용을 심화, 확장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데 두 제목이 같을 경우 이중게재나 중복게재에 해당되는가?

ANSWER

포스터와 논문은 연구 성과의 발표 과정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분량에 따라서 연구 성과를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이나 온전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포스터 보다는 논문에서 더 완성된 연구 결과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포스터 발표가 선행되고, 출처를 밝힌 후 정식 논문으로의 형태를 갖추고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여 출판한 경우가 많다. 이는 포스터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심화시키고, 미처 담지 못한 연구 성과를 더해가는 정상적인 연구의 심화 과정으로서 권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중게재나 중복게재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의 '생명의학분야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의 부분에서 '전문 학회에서 초록 또는 포스트 발표 등 예비보고를 한 결과를 완성시킨 논문은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때 학회 초록집 등에 자세한 자료, 도표, 표, 사진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다. 다만 포스터 발표에서 연구 데이터의 핵심 자료를 포함시킨 이후, 출처표기 없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였다면 연구 데이터에서의 중복게재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고자는 후속논문에서 포스터 발표 사실을 밝히고, 해당 학술지에 투고하면서 ○○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밟음으로 인하여 첫째, 투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당히 재사용하였고(인용) 둘째, 해당 학회에 출처를 밝힘으로써(인용 및 사전 연구 결과물 존재 안내) 연구 데이터를 고의로 중복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정상적인 연구의 심화 및 체계화의 의도로 후속 논문을 작성하였음을 알리게 된다.

단순히 제목이 같음으로 인하여 이중게재나 중복게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밝히고 중복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나 문구 등은 올바르게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논문에서의 제목은 포스터 발표 이후 논문으로의 발표할 때 심화 또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연구 내용에 더욱 적합하게 일부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조.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연구윤리 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 · 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6.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부록1), 2008.

QUESTION 66

연구 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 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A연구소는 외부 기관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수집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모아서 논문집으로 발간하였고 이 논문집은 ISBN 번호를 부여받았다. 한편 A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외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당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연구방향이나 접근방법이 동일하고 내용도 거의 같은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NSWER

제출된 연구 용역보고서를 묶어서 학술서적으로 만들고 이에 ISBN 번호를 부여하거나 인터넷 공간에 등재해 공개하면 이것은 하나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추후에 이 저작물을 보강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다면 '이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가 논문집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자가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저서로 출판된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시행한 기관에 학술지 논문의 출판과 관련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용역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연구 성과가 이전될 수도 있고 외부 출판 시 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를 확보한 이후에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선행 연구결과가 연구결과보고서로 출판된 바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밝히고 논문에 이 사실을 표기하여 본 논문에 대한 학술지 게재 여부를 학술지 편집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국내 학술지에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 해석 모델링을 통한 검증과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결론을 도출한 논문을 외국 저널에 게재하였다. 외국 저널에는 이미 출판된 바 있는 국문 논문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2개의 논문은 당연히 같은 실험에서 시작된 논문이므로 실험과 관련된 내용(시험체 설명, 실험방법, 실험 데이터)은 유사하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상이하며 서론,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결론이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후속 외국 저널 논문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NSWER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술지마다 다소의 편차가 있다. 각 학술지마다 투고 및 출판 policy를 갖고 있으며, 여기서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투고 논문에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중요한 자료나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모호하다고 생각할 때는 투고할 때부터 관련된 선행 연구물을 투고 논문과 함께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알려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상이하고 서론,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결론이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에 동일한 실험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출처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본 사안은 요즘 국내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비난의 여지가 많은 의도적인 중복게재 혹은 이중게재와는 차이가 있다. 논문 저자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나 출판 규정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사항을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중복게재에 대한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므로 논문을 게재한 외국 학술지 편집인에게 연락하여 중복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출처표시가 누락된 점을 밝히고 논문 수정(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철회)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0.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연구자가 학위 과정 중에 얻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이미 사전 게재한 논문의 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의 일부로 포함시켜 최종적인 연구 결론을 도출한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을 사유가 되는가? 이때 사전 게재한 학술지의 논문 내용을 본인의 학위논문에 포함시켰으나 참고문헌에 해당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ANSWER

학위 논문은 학생이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의 단계로서 전문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지 논문과는 성격이 다르며, 논문의 독자군 또한 구별되어 있다. 학위 논문의 작성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지도교수와 심사자에게는 연구 성과의 평가와 함께 올바른 학습과 연구 성과의 집필 즉 논문 작성에 대한 지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분야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 결과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지 간 논문이 무조건적인 재출판 또는 인용 없는 무단 사용을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논문의 선행 출판 관계를 후속 논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위논문 심사 중 위의 사안을 자기표절이라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자체를 인준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인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의 지도 의견 (논문 수정 의견) 등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출처를 표기하고 국내 출판사(유료)를 통하여 출판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ANSWER

-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사전 학술지 논문의 출판 정보를 꼭 기입하고, 학회의 동의를 받아야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먼저 연구윤리 차원에서 살펴보자. 다수의 연구자가 사전에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묶어 독자를 위하는 목적이거나 기념의 목적으로 재출판 하는 경우는 간혹 있으나 반드시 이에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첫째, 싣고자 하는 논문을 출판하는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둘째, 신규 책자에 실릴 논문의 사전 출판 정보와 재출판의 목적을 밝히고, 셋째, 출판 이후 각 저자들은 연구 성과물의 중복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필요에 의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논문 출판과 책자 발행까지의 인과관계를 모두 기입하거나,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위의 사항들은 중복게재 및 연구 결과의 중복사용을 피하여 정상적인 2차출판을 위한 과정이다. 신규 책자의 내용이 저자들의 이전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지만 독자에게 유의미한 목적으로 재출판된 것으로써, 저자들은 연구 결과를 중복사용할 목적이 없음을 밝히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저작권 차원이다. 해당 학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학회에서는 논문의 출판 이후 해당 학회나 학술지에 저작권이 전부 또는 일부 귀속됨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연구자에게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논문의 투고 전에 해당 학회지 규정의 숙지 의미 등이 있다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 물론 각 저자들에게도 논문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가 있으나 전문을 활용한 2차출판의 경우 연구윤리와도 유관한 부분이기도 하여 해당 학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과 선 출판 정보의 기입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출판에 앞서 책자 발행의 의미와 관련 사항을 학회에 전달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자권』, 2009, pp. 70–7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 70.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QUESTION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 모형을 수립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사회과학연구에서 연구 모형을 수립하여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발표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ANSWER

- 단순히 언어를 달리하여 유사한 내용을 중복으로 출판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두 개의 논문이 모두 별개의 연구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출판해야 중복게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및 국외 논문의 구별과 무관하게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속 논문에서 선행 논문을 참고 문헌 및 인용 등의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71

A와 B라는 실험 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A와 B라는 실험 데이터를 각각 다른 저널에 출판을 한 이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연구 주제를 착안하였습니다. A와 B내용을 연계한 신규 논문의 출판이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A와 B 각각의 학술지 저널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진 C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의 중복게재와 관련된 질의로서 C라는 신규 논문의 출판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중복게재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고 신규 논문이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첫째, A와 B의 논문에 있는 내용과 데이터를 C논문에서 재수록할 경우 인용 및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논문의 제출 시 해당 학회에 C논문의 배경(A, B의 출판 기록)과 연구의 목적(가치)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둘째, 위의 과정을 통하여 이전 연구 결과물의 정당한 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새로운 연구 결과가 부족하면서 A와 B의 지나친 재사용이 있다면 이 또한 연구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됨으로써 중복게재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C논문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A, B 논문의 지나친 재사용과 유사성을 제거하고, 신규 연구 성과로서의 독창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논문을 구성하고 작성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4.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 용역 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대학원생이 이전에 참여한 연구 용역 과제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연구 보고서에 대한 인용이 없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만약 인용 표시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가?

ANSWER

첫째, 해당 용역 과제의 주관 기관에서 연구 결과물의 재출판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자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활용과 관련한 협약 내용에서 사용가능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본인의 소속 대학에서 외부 연구과제 보고서 또는 학회지 논문의 석사 학위 제출 시의 규정 또는 안내 사항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위논문 제출과 함께 해당 논문의 내용이 이전에 외부 학술지 등에 출판되었는지 등을 고지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셋째, 저자권의 문제이다. 본인이 참여한 해당 용역 과제에서 단독으로 참여하였는지, 아니면 연구 책임자도 존재하며 또 다른 참여자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 외에 다른 연구 책임자나 연구자가 함께 수행하였다면 이전 연구 결과물의 재활용 또는 학위 논문의 투고에 앞서 저자들 간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을 재사용하면서 인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내용을 학위 논문에 인용 없이 사용하였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보고서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신규 연구 결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가지지 못할 경우 중복출판 및 자기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 연구보고서를 일부만 인용하여 활용하고 추가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가치를 부여할 경우 학위논문으로의 작성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연구 보고서의 논문 제출 시 중복출판의 문제로 인하여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지도교수와 논의가 필요하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7–41.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QUESTION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위과정 중에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 일부가 학술지 논문에 게재되었고 당사자는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고 출판된 논문의 출처로 밝히고 또한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 저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학위논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가?

ANSWER

근래 적지 않은 이공계 학과에서는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학위 논문에 포함된 연구 내용의 일부를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학위논문 작성 시,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이렇게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이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을 밝히고 인용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 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 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자신의 학위 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과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 된다.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하여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을 해 주어야 한다. 사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도교수와의 의논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6.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74

국내 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모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국내 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의 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외국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의 영문 논문으로 다시 게재하면서 선행 논문인 국내 학술지에 대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국내 학술지 편집인에게 동일한 연구 내용의 후속 출판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저자는 국내 학술지에 발행된 선행 논문을 취소하였다. 이런 경우 저자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은 어떤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선행논문을 삭제했다면 후행논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ANSWER

이는 명백한 동종언어 간의 이중게재이다.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중게재로 판단을 했다면, 두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에 통보하고, 그 학술지에서 논문 철회 혹은 수정 조치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연구자가 논문을 철회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7.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ANSWER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는 분야도 있다. 케이스가 희귀하거나 특이한 경우가 적지 않은 의학 분야가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연구자 본인이 참여해서 얻어진 동일한 공동 데이터(표나 그림 포함)를 후속 논문에서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데이터가 이미 사용된 논문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데이터의 표절 또는 중복사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후속 연구의 방향과 흐름이 이전 연구의 그것과 다름에도 이미 활용한 동일한 공동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여야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후속 논문이 학술적으로 독자성을 갖춘 논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얻은 연구 데이터일 경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의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데이터의 재사용에 앞서 참여 연구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76

자신의 선행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한 연구자가 자신의 후속 논문에서 선행 논문에서의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ANSWER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가 겹치는 부분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인 아닌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술로 제한되어진 경우에는 고의적인 자기표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것은 활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전 논문에 있는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논문에서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선행 연구 결과 정보를 소개하거나 인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가급적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활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을 무단으로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77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수정 · 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수정 · 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출처를 밝힐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ANSWER

논문 투고 전에 연구 과제의 시행 기관으로부터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투고할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 성과의 재출판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의 활용(논문 투고 등)이 가능한 사업인가?, 이때에 사사표기 등을 포함해야 하는가? 결과물을 활용하였을 때 연구(사업) 결과의 보고 시 또는 보고 후에도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협약서나 연구관리 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관리 및 연구 주관 기관에 확인하면 된다. 자체 연구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연구 성과를 외부에 출판하는 것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저자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국가 R&D 사업의 경우 분명히 공동연구자나 참여연구원 그리고 협력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로배분(저자권 등)을 후속 논문 출판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 성과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 투고 시에는 연구의 수행 및 출판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들을 모두 해당 학회 등에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전에 수행된 연구보고서를 아무런 고지나 인용 없이 논문으로 투고 할 경우에는 자기표절 등의 중복게재의 의혹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0.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자권』, 2009, p. 4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7–41.

QUESTION 78

질적 연구의 수행 결과, 연구결과 양이 많아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자 및 방법 등이 동일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질적 연구를 완성하고 보니 양이 상당히 많아져서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연구제목,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연구내용, 결론은 다르지만,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ANSWER

논문의 내용과 특성상 논문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만으로 연구부정행위라 판단할 수 없다. 후속 논문을 발표하면서 선행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거나 언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독자에게 후속 논문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투고할 학술지에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투고자의 충분한 설명 없이 논문 심사가 진행된다면 유사 논문과의 중복성 · 유사성 구별이나 신규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후속 논문에서 논문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나 인용 없이 선행 논문과의 차이점이 없는 중복된 내용 등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신규 논문의 질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논문 쪼개기나 부풀리기, 자기표절 등과 같은 중복게재 의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79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ANSWER

과거에는 학생이 학위과정 중에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학위논문은 국내 · 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연구내용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등으로 발표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는 학술지 투고 과정의 peer review의 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제되고 보강이 이루어진 후, 관련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전파되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매우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반드시 후속 학술지 논문에 선행 연구 결과물인 학위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분야는 이런 경우 "본 논문은 OOO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기 전에 반드시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해당 학술지의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야 자기표절의 시비를 피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80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ANSWER

연구윤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와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어떤 연구윤리 전문가는 자기표절의 한 유형으로 중복게재를 분류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며, 자기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용어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이후의 저작물에서 마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독자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업적 인정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중복게재를 둘러싸고 연구자들 가운데에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이후의 연구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심화 및 확대된 연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면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내 · 외의 여러 기관에서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조. 〈국내 · 외의 여러 기관에서 중복게재 규정〉

기관	중복게재에 대한 정의
서울대학교	연구자는 이미 게재 · 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 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	이미 인쇄 또는 전자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considerable parts) 중첩된(overlap)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이인재, "중복게재는 무엇이며, 자기표절, 이중게재와 어떻게 다른가?"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page=3&bwid=274(2016. 11. 30일 접속)

QUESTION 81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되는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기 발표된 논문이며 이를 수정하여 다시 투고함"이라고 명시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ANSWER

본 질문은 1차와 2차로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판 관련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발표된 논문을 번역하여 재출판 할 경우, 선행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와 나중에 출판할 학술지의 재출판에 관한 가이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재출판 가이드가 없을 지라도 선행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에 재출판 의사와 취지를 밝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후속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이미 출판된 정보를 밝히고 승인을 확보하였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후속 논문을 출판하는 해외 학술지에서 모든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면, 양 학술지의 동의를 얻은 재출판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이차게재라고 하며 이는 정당한 출판행위이다), 논문의 재출판 시에도 독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000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한 목적을 위해 다시 게재함" 등과 같은 코멘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74.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82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한 박사과정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자를 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을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한 연구실에서 3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용하여 박사과정의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졸업하였다. 공동연구의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한 바 있는 박사과정 연구원을 공동저자로 등록하여 출판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NSWER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학술지 논문은 동료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되므로 학위논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으나 실험 내용, 관련 표, 그래프 등 자료가 똑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 각주(내용주)나 참고문헌에 이미 발표된 학위 논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3명이 공동연구를 한 결과를 한 사람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먼저 활용하였으나 이 결과물을 전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연구 결과물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3명의 공동 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때 박사학위논문의 데이터나 내용을 다시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알리고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7.
- 이인재, "학술지 논문의 단순 요약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page=3&bwid=274(2016년 11월 30일)
- 이인재, "석/박사 학위 논문을 쓴 후, 이것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중복게재가 되지 않을까요?"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bwid=375(2016년 12월 1일 접속)

QUESTION 83

조사보고서 2권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한 책자를 공저자가 발간하면서 소속 기관과 협의가 없었다. 중복게재인가?

2년 간의 조사 보고서 2권을 근거로 하여 2인의 공저자 가운데 한 명이 기존 보고서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하여 연구원과 협의 없이 책자로 발간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NSWER

표절, 중복게재 등의 판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각 대학들이 교육부의 훈령을 기초로 하여 자체 규정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부처의 해당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부정의 제보 접수 시, 관련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심층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은 민사로서 해결이 되고 있다.

만약 본 건과 관련된 소속 연구원에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 또는 연구보고서의 작성과 관련된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 보고서의 저작권 소유가 소속 연구원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 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속 연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출처표기를 포함한 사용 허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과제에 참여한 공동 연구자와의 저자권(authorship) 논의를 통하여 후속 연구 성과(저서, 논문 등)에서의 저자권 등록 문제를 협의하여 재출판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다.

연구 성과의 재출판 혹은 재사용 시에는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연구의 수혜(지원 여부 등) 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연구 업적 및 연구 성과를 제출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재출판 사항을 표기하여 연구 성과가 공정하지 않게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재출판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구부정행위의 측면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권고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 또는 회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을 할 수 있다. 판정 이후에는 후속 저작물의 중복게재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84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학술지에 재출판하거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ANSWER

정당한 2차 출판을 위한 사전 동의를 확보하고 2차 출판 내용에서 그 출처를 밝히면 가능하다. 일반적인 중복게재는 학술지 논문 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학위 논문의 학술지 출판은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다시 작성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자군이 다를 경우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에 해당 논문의 재출판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2차 출판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원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역시 정당한 2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해당 학술지의 지침이나 가이드가 우선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학술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1차, 2차 논문은 동일한 내용의 논문 두 편이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연구업적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업적 인정율이 높은 하나의 논문을 업적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8.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85

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동일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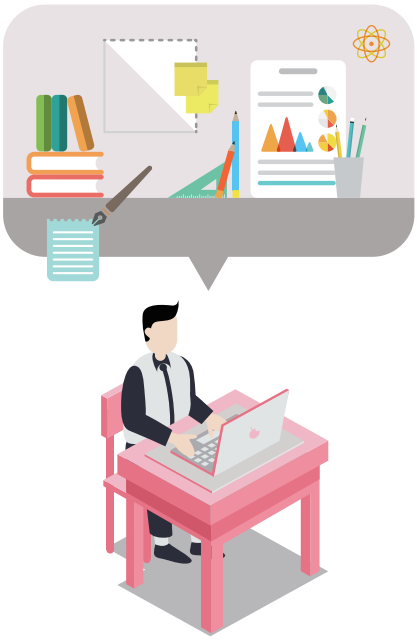
해외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한 후, 동일 논문을 다른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요? 논문을 투고할 때에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근거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학술대회는 별로 중요한 학술대회는 아니었고, 학술지는 SCI급이었습니다. 중복게재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제가 이 상황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요?

ANSWER

- 두 개의 질문으로 파악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그대로 다른 해외 학술지에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면 중복게재에 해당되는가? 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학술대회 발표문을 모은 프로시딩이 공식적인 출판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공식적인 출판물로 간주되며, 여기에 이미 발표된 내용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또는 투고하고자 하는 해외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중복되는 내용이 이미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게재하였다면 중복게재로 판단될 수 있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학술지가 SCI급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출판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중복게재라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이다. 해당 학술지나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중복게재라고 판단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징계나 제재 조치는 학회나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정한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제재의 양형도 중복게재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관련 규정의 존재 유무, 당시의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자 및 학계의 인식 수준,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로서의 심각성, 중복게재의 고의성, 중복게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해당 학술지에서 중복게재 된 논문이 삭제되거나 삭제할 수 없을 때에는 후속 발행되는 학회지의 공지란을 통해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로 인하여 철회된다'는 언급이 있게 된다.

연구자는 중복게재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이후의 연구에 활용할 때는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중복성이 있는 관련 자료를 학술지 편집인에게 정직하게 알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중복성이 있지만, 해당 학술지의 독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학술지에서 게재를 승인하고 출처를 밝히고 활용하면 중복게재가 아니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86

과제물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써도 자기표절인가?

대학에서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를 학사학위 논문으로 쓰면 이것도 자기 표절이 되나요?

ANSWER

- 대학에서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는 엄밀하게 보면, 다른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학사 논문으로 제출한 것을 자기표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87

출처를 밝혔음에도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연구의 이론적 배경(문헌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편저로 이미 출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으로 출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편저로 이미 출판된 부분을 요약하여 논문의 이론적 배경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논문의 서론 페이지에 각주를 달아 "논문의 일부가 편저로 출판된 내용을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정도로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논문에 출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연구자가 후속 연구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불가피하게 이전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구의 심화, 확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미 발표된 자신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이 후속 연구에서 활용될 때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힘으로써 마치 후속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는 국내 · 외의 선행 연구에 대한 리뷰의 내용(특히, 이론적 배경)이 상당히 중복될 수 있는 바, 이를 후속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후속 연구의 주제나 목표에 부합하게 요약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거의 그대로 가져올 때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어떤 연구물에서 온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즉, 해당되는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는 소목차 등에 포괄적 또는 개괄적인 출처표시를 하고 이 내용이 자신의 어떤 선행 연구물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출처표시를 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6, pp. 166–173.

QUESTION 88

논문의 구조와 형식이 비슷하고 연구 방법과 범위가 같을 때 구조적 자기표절인가?

제가 메이크업 샵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과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학술지 논문(통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요인 중 가격 책정, 분위기, 시술 상품 및 부가 서비스, 직원 서비스로 나누어 학술지에 각각 투고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논문의 구조와 형식이 비슷하게 되고 연구 방법과 범위는 같습니다.

연구 방법과 범위가 같다 보니 연구자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논문에 명시하니 학위 논문을 쪼개어 진행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구요. 그건 아닙니다. 메이크업 샵 관련 선행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고 서비스 품질에 관한 논문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조적 자기 표절에 걸리는 것인가요?

ANSWER

일단 구조적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논문 쪼개기와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된다. 중복게재의 한 유형에 속하는 쪼개기 논문(fragmented publication) 또는 살라미 논문(salami publication)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후, 최소 출판 단위(least publication unit, LPU)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체로 연구 대상이나 연구 결과를 쪼개어 출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풍부성 및 완성도 측면에서든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쪼개기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 논문 투고 전에 이렇게 나누어 논문을 작성해도 학술적 가치를 가진 독자적 논문으로 충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출판된 것과 중복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지 등 엄격하게 스스로 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관련되는 선행 연구들을 첨부하여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전에 발표된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이전에 비해 학술적으로 의미있고 명백하게 다른 내용을 발표한다면 이는 수용할 수 있는 학술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 이인재, "중복게재의 한 유형으로서 쪼개기 출판은 무엇인가?"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page=2&bwid=307") 2016년 11월 15일 접속)

QUESTION 89

ISSN이 있는 프로시딩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게재인가?

우선 ISSN번호는 동일한 학회에서 학술 대회 발표집으로 전문을 발행하고 다시 분기별로 나오는 학회지로 전문을 다시 발행을 하면 중복게재이며 연구윤리에 벗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학술 대회집이 전문이 아닌 초록 형태로 발간이 되고 다시 전문으로 수정 후 분기별로 나오는 학회지로 다시 발행을 하면 중복게재가 되는지요?

ANSWER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출처를 밝혔느냐 아니냐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 출판된 자신의 선행 연구의 중요한 내용을 후속 연구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중복게재로 본다. 물론 여기서 '공식 출판된 것'의 의미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학위논문, 학술발표에서의 프로시딩,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있다.

본 사례의 경우, 학술 대회 발표집(프로시딩)을 공식 출판된 간행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논문 전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중복게재이다. 학술 대회 발표집에 초록 형태로 되어 있고, 보통 초록의 내용이 전체 연구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중요한 데이터나 결론이 요약되어 있지만 논문 전체가 아니므로 이를 보완하거나 확대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출처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중복게재로 판단하지 않는 학문 분야나 학술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의 연구 환경에서는 논문의 초록을 담은 프로시딩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기에 공식적인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학술지 논문에서 다시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전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활용할 때 이것이 중복게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나 출판사가 자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고 전에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공식 출판된 것의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ISBN과 ISSN가 있는 바,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국제표준도서번호)은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단행본 도서에 고유번호를 주어 개별화시킴으로써 문헌정보와 서지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제도이다. 이는 출판물을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식별하는 13자리로 구성된 표준코드로 서지적이며 기술적인 복잡하고 긴 기록들을 대신한다.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연속간행물의 고유 지명을 표시한 숫자 기호를 국제표준도서번호와 대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ISSN은 ISBN과 마찬가지로 연속간행물의 데이터를 갱신, 검색, 제공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출판사와 서점 간의 유통과정에서는 주문, 반품, 재고관리 등 경영관리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 업무를 신속, 정확, 그리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수서, 편목, 대출, 서가 배열 및 장서 관리와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QUESTION 90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학위논문에서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본인이 학술지에 제1저자로 게재한 학술 논문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이용하여 3 에세이 방식(유사한 3개 정도의 논문을 묶어서 학위논문으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구성할 경우
2.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학위논문의 일부 챕터에 이용하는 경우

2가지 경우에 대해 사용하는 방법에는 1) 학술지에 게재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 2) 내용을 편집하여 재구성 하여 사용 하는 방법, 3) 인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인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인용이 허용되는지요? (예: 전반적 내용, 내용 결과에 대한 몇 줄 정도의 인용(이 경우 선행 연구의 인용과 본인이 작성한 학술논문에서의 인용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등)

Q&A를 살펴보니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있던데,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요?

ANSWER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동료 심사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다. 그러므로 학술지에 있는 자신의 논문 내용(유사한 3개 정도의 논문을 묶어 학위논문으로 구성하거나 하나의 학술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chapter로 활용)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시 활용하였다면(그것이 질문에서처럼,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든, 재구성하여 사용하든, 인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든) 출처를 밝혀야 한다. 또한 얼마만큼을 인용해야 허용되는가의 문제, 즉 인용의 양과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박사학위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를 생각해 보자. 학술지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에서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새로움의 요소가 더해 뭔가 발전된 내용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활용하지만, 후속의 학술지 논문이 학위논문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 내지 거의 그대로 다시 활용하는 수준이라면(학술지마다 학위논문의 재활용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범위가 다르므로 투고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함. 즉 단순히 학위논문의 요약이나 발췌의 경우 투고를 금하는 학술지가 많음) 이전 연구에 비해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차이를 기대하는 독자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출판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91

학술대회 요약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해도 되는가?

같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프로시딩 형태로 발표를 하고 발표 자료집에 실은 뒤, 이를 발전시켜 두 세 달 안에 동일 학회 학회지에 게재(동일 주제와 키워드) 하는 것이 자기표절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반대로 해당 학회지에 먼저 게재를 하고 이를 요약하여 학술대회 발표와 요약본 발간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학술발표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이를 발전시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해당 학술지의 출판 정책(매뉴얼)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 학술발표 대회를 위해 만든 자료집(프로시딩)의 성격 규정이나 이에 있는 내용을 활용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학회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시딩은 비공식적인 출판물이므로 여기에 있는 자신의 발표 내용을 출처표시없이 재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프로시딩이지만,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이 게재되어 정규 학술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학술발표 대회 당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자료집으로 한정적으로 배포되지 않고 학회 홈페이지 등에 탑재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널리 인지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에 있는 것을 가급적 출처를 표시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학술지에 먼저 게재된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대회에서 요약하여 발표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여기에 이미 게재된 것을 요약 발표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92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자기표절인가?

제가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하여 A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 이후 논문을 다시 정리하여 A학회지에 투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투고가 가능할까요?
2.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2편으로 나누어 A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3.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재가공(변수 삽입 및 통계분석을 다시 하였음)하여 논문을 다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투고가 가능할까요?

위에 질문 드린 3가지의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질문 1과 관련하여,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활용하여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할 때, 적절히 출처를 밝히면 중복게재가 아니다. 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공식 출판된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학위논문을 인지 내지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한 인터넷 시대에 학술지 논문에 재활용된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위논문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발췌를 통해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급적 어디에서 발표되지 않은 최초의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출판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고 학술지 지면의 낭비, 심사자와 편집자의 불필요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런 논문 투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내 · 외 학술지가 많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질문 2와 관련하여, 먼저 한 편의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2개로 나누어 투고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타당한가? 의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2개로 나누어도 독자적인 논문으로서 새롭고 가치가 충분하다면 분리 투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그럼에도 두 논문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확한 출처표시가 있어야 한다.
- 질문 3과 관련하여, 한마디로 학위논문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별개의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변인, 데이터, 해석 및 논점이 있다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투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당연히 이때에도 학위논문과 겹치는 학술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93

처음 출판되었던 책의 출처를 표기한다 해도 중복게재 항목의 자기표절이 아닌가?

이미 단행본의 한 챕터로 사용된 글을 다른 책에서 또 묶어 총서로 낼 때, 재사용하는 것이 표절이 맞지요? 모처에서 제 글을 재사용해달라고 허락을 구해 왔는데, 먼저 이 생각이 납니다. 연구 매뉴얼에 나오는 항목인지요? 이런 예가 있는지요?

ANSWER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인 것은 아니다. 이전에 발표 내지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시 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마치 처음 발표하거나 새로운 것처럼 하였을 때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질문처럼, 이미 출판된 단행본의 한 챕터의 내용을 다시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또는 최소한 출처표시를 하고), 활용하여야 자기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처음 출판된 책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보완 및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출판된 내용의 것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학회나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된 단행본의 한 챕터의 내용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왔다면, 이미 출판된 책의 출판사에게도 알려 허락을 구하고, 출처표시를 하면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는데 있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먼저 중복된 출판물의 업적 인정과 관련한 소속 기관의 규정이 어떠한지를 살펴 이에 따르면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앞서 출판한 것과 내용이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둘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5.

QUESTION 94

본인이 쓴 여러 편의 저널 논문을 정리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여러 편의 특정 주제에 대한 본인의 저널 논문을 정리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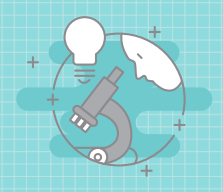
ANSWER

박사학위 논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규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자격 요건으로 전문 학술지에 1~2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한 실적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으며, 따라서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통합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발표된 자신의 선행 연구물을 단지 합쳐서 제출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이 갖추어야 할 내용적인 요소인 독창성, 논리성, 진실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중요한 아이디어나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시 활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6.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72.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Q. 95 ~ 122

QUESTION 95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 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ANSWER

-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은 곧바로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며, 유사도가 높은 논문을 검출하거나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사율이 높아도 그것이 해당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나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낮은 유사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에 비교 원문이 없다면 유사율은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사율이 곧바로 표절임을 나타낸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사도를 지정하여 표절을 판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대표적 표절 검색 프로그램인 'ithenticate'와 'turn it in'을 서비스하고 있는 iParadigm 社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Paradigm 社의 비즈니스 매니저는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만으로 표절을 판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최종 판정 과정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개입을 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 후에 판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2013. 04. 09. 건국대 '연구윤리 및 표절방지 세미나').

정리하여 보자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는 표절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식별함으로써,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신속하게 그 유사도 정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표절로서의 판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밝힌 검증 절차에 의하여 검증 주체의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다각도의 조사 및 검토에 의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11월 3일에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에 의하면,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중요한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 사이에 얼마나 유사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고, 유사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 부분이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할 대상이라면 출처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표절은 출처표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처표시를 했다고 했지만 부적절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4.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QUESTION 96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기념 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에서 논문 저자가 조사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기술하였고, 논문 본문의 80~90%를 오려붙이기 하여 사용했으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논문을 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며, 조사는 어디에서 진행되는가?

ANSWER

◆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처는 국가 R&D 부처의 장 및 전문기관(과제 관리기관), 연구기관(대학, 출연연)으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는 학회 등의 학술단체가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와 관련하여,
각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권한을 갖는 검증 주체에 제보를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아래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7조 참조)

검증 주체는 제보 사실을 접수하고, 관련 지침 등에 의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리게 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을 두어야 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6.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27–128.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90.

QUESTION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 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A는 특정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B 기관에 제보를 하여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제보자 A는 B기관에 예비조사 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ANSWER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제보 사실, 즉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말 그대로 예비절차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조사와 달리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제보자에게 위원 선정 안내와 관련한 의무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보자가 B기관에 예비조사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B기관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본조사의 경우에는 본조사 착수 전에 반드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통보하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은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각 조사 단계에 대한 안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보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5조, 제19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0–111.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64–65.

QUESTION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ANSWER

연구부정행위 제보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연구자의 부정한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는 좋은 시민의식이자 전문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관련 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야 말로 신뢰받는 연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받는 연구문화는 건전한 제보자, 즉 내부 고발자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선뜻 제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자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폐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미래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3. 8)〉등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보자가 해당 제보로 인하여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실무자의 제보자 신원의 비밀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사상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부정행위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만큼 제보자가 사전에 언론 등에 해당 혐의를 노출하여 피조사자의 명예 등을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소송 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제보자로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4조, 제17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0.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0–111.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64–65.

QUESTION 99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ANSWER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제보 사실, 즉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보자의 출석과 진술 등은 본조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보자는 제보 이후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해 출석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보자는 불이익 방지와 신원 보호의 대상인 만큼 조사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조치가 잘 보장된다면, 제보자는 출석 및 인터뷰 요청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2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1.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06–10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52–55.

QUESTION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A 교수는 학부학생 B와 함께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하였다. 논문은 아직 출판된 상태가 아니고 학술지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 중에 있다. 해당 투고 논문에서 A 교수는 학부 학생 B를 공동저자로 넣지 않았으나 참고사항에 학생의 이름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A 교수의 소속 기관에 B학생이 제외된 채 A 교수만 저자로 등재되어 투고한 A 교수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라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A 교수의 소속 기관에서는 논문이 출판되지 않고 심사 중에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여야 하는가?

ANSWER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상당한 참여를 하고,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에 기여를 해야 한다. 논문의 저자가 반드시 박사학위 과정 혹은 수료 이상일 필요는 없다.

저자가 저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학부생이라도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 가능하다. 만일 제보자의 주장대로 학부생이 작성한 내용을 학부생을 저자로 포함하지 않고 발표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다만 현재 논문이 게재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투고되어 심사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논문 수정과정에서 해당 학생을 공저자로 등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인데 논문이 출판되지 않고 투고된 상황이라도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연구의 제안 · 수행 · 심사 · 결과의 보고와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사건의 조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므로 예비조사는 수행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외부인사가 포함될 필요는 없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혹은 대학 자체 규정에 명시된 예비조사 주체가 맡아서 하면 된다. 예비조사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본조사가 당장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므로 논문 심사과정에서 해당 논문에 저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동저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06–10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1.

QUESTION 101

대학 전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대학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심사를 진행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ANSWER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의 대학이 검증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 채용 지원자의 연구 수행 당시 소속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에서는 신규 임용을 위해 지원자에게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연구 업적에 대해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서약하게 하고, 만일 연구 업적을 심사하는 도중이나 임용 후에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각 논문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수 공채를 진행 중에 있는 해당 대학은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통상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달리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를 인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채용 대학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가 아닌 만큼 굳이 교육부 훈령이나 대학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외부인이 포함된 본조사, 판정, 통보, 사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소속 기관에서 정식 검증 절차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판정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6조, 제18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06–10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1.

QUESTION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모 연구자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 논문의 가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학술지를 발행한 학회에서 논문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가설 재검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 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하고자 한다. 이때 문제는 없는가?

ANSWER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관련된 검증 주체가 별도로 검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단 먼저 한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고 다시 할 필요없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회의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학의 자체 조사나 검토없이 해당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아니다. 학회의 조사 결과는 가설 재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줄 뿐, 연구자의 윤리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속 기관은 검증 과정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피조사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 판정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조사 결과는 해당 문제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으로서 판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6조, 제18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4.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2–11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75.

QUESTION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2007년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 제정 당시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5년이었으나 2011년 개정된 지침에는 검증 시효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모 대학의 검증 시효는 여전히 5년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5년 이전에 작성된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NSWER

현행 교육부의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없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는 아직도 검증 시효를 두고 있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위논문,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 등에는 검증 시효를 두고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83–8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25–36.

QUESTION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우선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와 그 심각성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을 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정도가 심각하여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해당 학술지의 방침(일정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등)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전 논문의 저작권자(저자와 학술지 발행인)와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8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83–8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61–63.

QUESTION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통보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1조(결과 통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 통보(이하 이 조에서 "결과통보"라 한다)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 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 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의 통보는 1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전문과 본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각각 공문에 첨부하여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각 조사 결과 보고서의 결론만 요약하여 공문 1장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후 그 결과를 제보자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보내야 한다. 이때 '문서'란 검증 기관이 발행하는 공문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조사 결과의 모든 것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증 결론과 그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서 그 분량은 대체로 1~2페이지 이내로 하면 된다.

근거 및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58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11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24조, 제26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20–122.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84–90.

QUESTION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내년 2월에 석사학위를 받게 될 대학원생입니다. 이번에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고 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 같으면 자기표절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당연히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문구는 작성하겠지만 이 문구를 넣더라도 자기표절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론 내용의 일부는 바뀌겠으나 논문 내용의 많은 부분이 비슷할 것 같고 그림 또한 동일한 그림을 게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FAQ를 살펴보았을 때는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다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문구를 정확하게 기입하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자기표절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표절이라고 하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얼마나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동일한 연구결과의 내용을 다르게 적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다르게 서론이 전개되거나 다른 논의가 작성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요. 만약 자기표절이라면 어느 수준까지 허용이 되고, 어느 수준부터 허용이 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 학위 논문의 내용을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학위 논문에 바탕을 둔 학술지 게재 논문이 만들어지고, 이 학술지 게재 논문에 인용된 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면 (포괄적으로 “이 논문은 000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위원과 편집인이 게재를 최종 승인한 경우) 자기표절이 아니다. 그러나 통상 학술지에서는 가급적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을 게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롭고도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 논문과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지 편집인에게 미리 알려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은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로 간주되어 비난을 받게 된다. 학문 분야나 연구의 특성 및 학술지의 출판 매뉴얼에 따라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출처를 밝혔어도 그것이 이전 저작물과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이 없다면, 자기표절에 해당되며, 이는 새롭게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하는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pp. 74–7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2–27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 2016, pp.167–168.

QUESTION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게재된 논문을 철회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검증의 대상이 된다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구성한 본조사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본조사위원회의 검토 시, 해당 학회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하자는 없는지요? 논문 철회와 연구부정행위처리와 관련된 일반적 기준이 있는지요?

ANSWER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자신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오류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타인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연구자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면, 연구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논문을 철회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진행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관련 학회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는데, 해당 학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논문 철회는 해당 연구자 자신이 오류를 인정하여 학회 쪽에 요청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다른 연구자나 학회에서 먼저 인지하여 검증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학술단체에서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제보 ⇒ 예비조사(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 ⇒ 본조사(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 ⇒ 판정(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 1차적인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연구자(피조사자)가 속한 기관에 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04–105.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38–41.

QUESTION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연구윤리 위반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본조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하여 예비조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제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 중 발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이 재심의 사항으로 부의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ANSWER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 후,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의신청 내용 중에 예비조사 단계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증거가 있을 때는 이의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이의제기 사항이 예비조사 단계가 아닌 본조사 단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바로 본조사로 넘겨 보다 심층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예비조사 단계에서 재논의를 해도 충분하다면 예비조사 위원들이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이때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될 때에는 예비조사 위원을 관련된 전문가로 더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9조, 제25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3–11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76–77.

QUESTION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논문 표절에 대한 조사위원 구성 시 해당 전문가 20%, 외부인사 30% 인원을 충족하려고 하나 내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한 외부(대학)에 조사위원 위촉을 의뢰하고자 하오나 이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라리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분야, 경제분야, 전자통신 분야입니다.

ANSWER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연구기관의 자체 검증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검증 주체가 된다. 그러나 검증 전문가 확보 등 자체 조사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자체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검증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이나 학회 또는 다른 외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 절차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제보자든 피조사자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공신력 있게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6조, 제18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191.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32–34.

QUESTION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제보 개요〉

질의자 소속 기관(이하 A기관) 연구자(제보자)는 A기관이 개최한 학술심포지엄 자료 가운데 A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하 B기관) 소속 연구자(피조사자)가 기존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표절하였다고 이메일로 A기관 연구윤리 담당자에게 제보함. A기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임.

〈문의사항〉

1. 위와 같이 연구윤리 위반 제보 접수 기관(A기관)과 피조사자 소속 기관(B기관)이 상이한 경우에는 검증 주체는 어느 기관이 되는지요?
2. 만약 검증 주체가 피조사자 소속 기관인 B기관이라면, B기관에 연구부정행위를 알리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3. 또한 검증 주체가 피조사자 소속 기관인 B기관이라면, 이미 구성된 A기관의 예비조사단의 활동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 과제가 수행될 당시에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관리 · 감독하는 기관에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검증 주체는 피조사자가 속한 B기관에 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 제보를 피조사자가 속한 B기관이 아닌 A기관에게 했으므로, 일단 A기관은 제보 내용을 B기관에 알려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A와 B기관은 이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검증기관인 B는 검증 결과를 A기관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6조, 제18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90–91.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32–34.

QUESTION 111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안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교육부 훈령과 본교 규정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 분야'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체육학과 경기지도학 전공 이학박사 학위수여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 분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 첫 번째 해석: 경기지도학 전공분야로 한정
– 두 번째 해석: 체육학 분야로 한정
– 세 번째 해석: 이학 분야

이렇게 3가지 해석이 가능하여 해당 연구 분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ANSWER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인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질의자의 첫 번째 해석인 경기지도학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의 제한 또는 조사위원으로의 참여를 사양할 때 관련 범위를 넓혀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에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다.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97.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64–65.

QUESTION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 1) 본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9조(연구지원기관등에 대한 보고)에는 "①위원장은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이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의 19조 ①항에 의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현재 우리 대학교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재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 2) 위 건과는 별건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교수(판정 완료)가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제보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및 본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의 논문도 검증해 봐야겠다면서 위원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위협하면 누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원을 하겠는가? 과연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하며 불편해 합니다. 이런 경우 이 교수의 행태가 향후 연구윤리진실성 조사를 방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여 (즉, 또 다른 형태의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질문 1)과 관련하여,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보완하거나 재조사 결정을 내려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다.

- 질문 2)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조사자가 명백하게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방해하고 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경우, 이 조항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25조, 제28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0–111.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132–133.

QUESTION 113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자기표절 및 표절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 대상이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기 이전인 2002년 논문 및 2004년, 2005년 학회 발표 논문입니다. 먼저 2002년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 있는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나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인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이 나오기 이전인 2002년 논문이라는 전제를 두고 봤을 때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인 표절로 규정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이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기 이전이라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또한 인용하지 않은 부분이 연구의 결과물 등의 큰 부분이 아닌 인터넷 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실험하는 부분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경미한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표절이라는 것이 경미한 표절, 중대한 표절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도 심의를 하면서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규정이 확립되기 이전의 심의 건에 대해 어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요?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분명 인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문제가 되는 행위로 지적해야 하지만, 그 반면에 심의 대상인 논문의 생성 연도와 연구부정행위 정도가 경미한 부분이라 이것을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이다 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그 중 대표적인 점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의 유무,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수준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83–8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37.

QUESTION 114

중복게재 판정 시 논문의 선후 판단기준은?

2편의 논문이 중복게재 판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후속 논문의 판단 기준이 학회지에 투고 시기인지 게재 허락 시기인지 아니면 출판된 시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후속 논문으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무엇인지요?

1. 투고일
2. 게재 허락일
3. 출판일

ANSWER

중복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 출판된 두 논문을 비교할 때 가능하므로, 판단 기준은 출판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투고일이나 게재 허락일보다 공식적으로 최종 출판(발간) 된 일자가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2-73.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35-36.

QUESTION 115

이의신청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맞는가?

이의신청 처리 주체는? 본조사위원회? 아니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ANSWER

교육부의 현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25조(이의신청)에 있듯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서처럼 이의신청을 받았다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이 접수되었을 것이고, 이는 다시 이를 처리할 기구로 대학의 경우, 통상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대학마다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사안을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할 대학의 공식 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또는 기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재차 청취할 수 있거나(이때 필요하면 이의제기 사안을 다룰 전문가를 보강할 수 있음),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이때, 대학의 규정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문제는 본조사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인 만큼, 이의제기 사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절차가 요청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24조, 제25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13–114.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76–79.

QUESTION 116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가?

법령 및 역사적 사실이 표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ANSWER

일반적으로 표절의 대상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고유한 연구의 과정이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인쇄된 것이든 인쇄되지 않았든, 온라인에 있든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면 표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역사적 날짜나 사실 또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사실 등은 일반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적인 사실이나 자세한 통계 수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일반적 지식이 아니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된 것을 사용한다면 역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 지식이 특정 (학문)공동체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모호한 경우는 출처표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를테면, 특정 국가의 인구, 면적, 민족 구성, 언어, 종교, 주요 자원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알려진 불변의 사실적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어느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재해석하고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알고 있는 일상적인 도로 주변 풍경 사진이고, '타인이 특정한 관점이나 촬영 의도가 반영된 고유한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출처표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것이 나름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면, 포털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상 상황, 사건 및 사고 등 사실(fact)에 대한 단순 정보인 경우처럼 누가 정리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출처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사실 관계라도, 어떤 기자가 자신의 분석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가미하여 그것을 재구성한 경우에는 그 기자의 고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필자의 고유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 논설, 칼럼 그리고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제시된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가 필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45–246.
– 이인재,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미포함된다는 식의 책자나 근거가 있는지요?" http://edu.copykiller.org/mod/ubboard/article.php?id=5&bwid=348 (2016년 11월 15일 접속)

QUESTION 117

이의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는 재 접수된 이의신청 처리결과 수리/기간 판단을 위한 기간인지? 만일 본조사 개시가 결정된 경우 본조사 처리 후 판정까지의 기간인지요?

ANSWER

질의한 기간은 이의 신청 접수 후 관련되는 것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면서 처리하고, 최종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의신청의 성격이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비조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다시 예비조사의 시작으로 돌아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에서 제보의 내용이나 핵심이 변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를 검증하여 처리하기에는 60일이 너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는 일단 이의신청의 내용이 본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기각을 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기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 보고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면, 가급적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면 이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마냥 길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본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이의신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혹 검증 과정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도 최대한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소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25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96.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38.

QUESTION 118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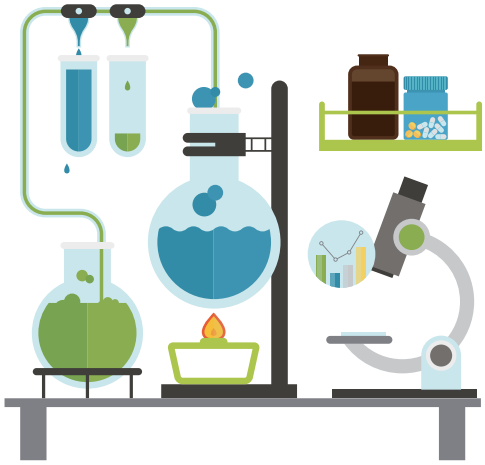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질문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한 자"는 분명히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 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된다면 저자자격을 부여받은 연구 실적을 자신의 대학교 교수 임용 또는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까?

ANSWER

질의자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의 "부당한 저자표시"를 잘 예시했듯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연구부정행위자에 포함된다. 연구자가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연구 업적을 교수 임용, 승진 등을 위해 활용하였다면, 해당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 업적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수 임용이나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68–69.

QUESTION 119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은 대학이 연구 감사팀 직원에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연구 감사팀 직원은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면, 해당 기관이 아래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와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ANSWER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개인적 판단으로는 안되고, 관련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처럼, 연구 감사팀 직원이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 혼자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예비조사는 본조사 수행에 앞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의미(inquiry)와 본격적인 조사가 불필요한 단순 사례를 걸러내는 의미(screening)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예비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충분한 경우라면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여도 무방하다. 이를테면, 사실 관계의 확인이 명료하고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경우, 반대로 제보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혹의 정도가 조사 또는 적절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사없이 예비조사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9조, 제20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24–30.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30–31.

QUESTION 120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는가?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법령이 혹시 있는가?

논문 A(2007년)와 논문 B(2004년)를 발견했습니다. 두 논문은 서로 다른 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A논문이 B논문과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어느 단락에서는 아주 똑같은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에, '표절'이라고 판단하고 A논문을 통과시킨 대학원에 표절 의혹을 문의했고, 표절 사실 여부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하려고 하자 '1) 관련자가 아니다, 2)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 3) A논문 작성자의 개인정보다'라는 세 가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재차 요구하니, 담당자는 저에게 '관련 법령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의 제기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여기서 필요한 법령이 혹시 있나요?

ANSWER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그 사실을 인지한 개인, 정부나 언론 기관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는 실명이 원칙이고 관련된 증거(정보나 자료 등)를 해당 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할 수 있다.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의 훈령, 제153호)에 의하면, 제보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4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86.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2–43.

QUESTION 121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는가?

교육부에서 관여하는 표절로 인한 조사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현직 교수가 책을 표절했을 경우에도 연구윤리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2. 그 책이 교수승진에 활용되었다면 연구윤리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3. 그 책이 교수승진에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윤리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4. 표절한 책을 신고하는데, 혹시 기한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저술한지 5년 이내의 책.

ANSWER

일반적으로 학술적 저작물에서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저작물의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표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물의 요건이란 저작자 자신의 것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현직 교수가 표절을 한 것으로 의심이 들 때, 해당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접수처에 제보를 할 수 있다. 이때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 제보일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표절된 연구 실적이 승진 등에 활용되었든, 되지 않았든 표절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와 관련하여 어느 기간 내에서만 제보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침에서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사안에 대하여 검증 시효를 두지 않고 있어 과거 모든 연구에서의 연구부정행위는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92–93.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35–36.

QUESTION 122

내가 가져다 쓴 타인의 글이 표절로 판정되면, 나도 표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연구자 B는 연구자 A의 논문 일부를 이용하면서, 출처를 밝히며 인용처리 하였으나, 인용된 A의 해당 글(단어, 문장, 문단 등)이 표절로 판정될 경우, 연구자 B도 표절이라는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것인가?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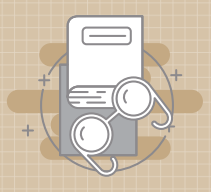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가져다 활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연구자 B가 A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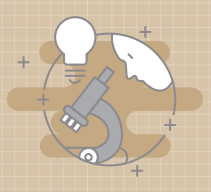
그런데, 자신이 인용한 A의 해당 글이 표절일 경우,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A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A가 직접 인용 또는 자신의 표현으로 말바꿔쓰기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살핀 후 B가 인용하고자 하는 맥락에 맞게 인용하여야 하는 점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경우 B는 A가 표절한 것을 모르고 가져다 쓴 것이므로 B도 표절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42–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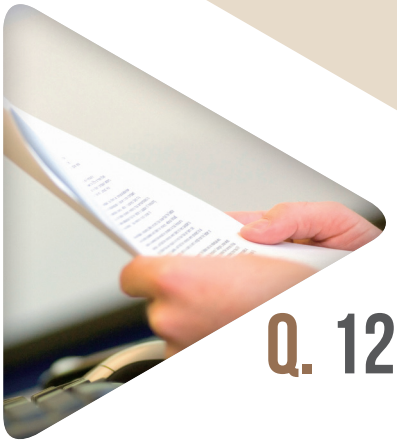






CHAPTER 7

IRB



Q. 123 ~ 138

QUESTION 12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신용불량자(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자 보호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설문 대상자는 익명화 처리를 해야 하며 설문 수행자와 데이터 관리자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익명처리의 효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원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도 금지되어야 한다. 설문의 내용은 연구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의 설명에 따른 동의서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설문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자발적인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설문참여에 대한 실비 수준의 보상 등도 필요하다.

- '신용불량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특히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1) 연구대상자인 신용불량자에게 연구자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불량자의 명단이나 정보를 연구자가 확보하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정당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의 상당부분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단 연구대상자 집단의 정보 확보가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전제하고 연구 진행과정상 유의할 점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방법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이 연구자 혹은 사법 당국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허락 없이 유출한 것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의 두 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연구자는 이들 신용불량자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밀의 유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 자료의 분실 · 유출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연구자에게 매우 곤란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들로부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정보를 어떻게 비밀유지를 하며 관리할 것인지도 연구대상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연구계획서에 충분히 기술하여야 IRB의 심의가 가능할 것이며, 실제로 연구과정에 있어서도 IRB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을 절차에 따라 준수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만 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7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36-40.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6.

QUESTION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심리학에서의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귀인방향 연구'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실험절차에서의 속임수 이용(deception)에 관한 윤리적 문제에 관한 사례이다.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귀인방향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이 질문에 대해 속임수 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가 크다고 예상할 때, 또는 연구목적 등을 모두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incomplete disclosure), 연구자는 연구 절차에서 속임수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속임수 이용 연구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나중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debriefing)을 해주어야 한다. 즉, 속임수 이용 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 대상자가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속임수 연구가 불가피했던 이유, 속임수를 이용한 방법, 연구의 실제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모두 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속임수 이용 연구에서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debriefing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자가 IRB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하며, 연구가 끝나기 전에 실제 연구목적 등을 알릴 경우 나중에 참여할 연구 대상자들이 미리 알아버릴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구의 종료와 함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65-66.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7.

QUESTION 125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김OO 연구원은 소속 IRB의 심의 없이 자신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 후 얻은 데이터를 포함한 논문을 투고하여 해외 저널에 출판하였다. 이후 이 논문을 본인의 학위논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여 자신의 지도교수와 논의 중에 지도교수로부터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라는 조언을 들었다. 자신의 인체 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self-examination)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ANSWER

- 국내 IRB 관련 법률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844호, 2014. 11. 19)에 따르면 인간대상 연구의 대상이 피실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험자이면서 피실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이면서 연구대상자이기도 하므로 김OO 연구원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에 문의하여 IRB의 관련 가이드에 따라 연구계획과 관련한 실험 방법 및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프로토콜을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자가 실험 연구에서 IRB 심의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결정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설치된 IRB 규정이나 실험의 방법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의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심의면제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연구자 스스로 심의면제 대상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IRB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정리하여 보자면

  1. 소속 기관의 IRB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는 연구수행 전에 진행하는 사전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연구 계획, 수행, 출판까지 모두 종료한 시점에서 후속 심의는 불가한 상황이다.

2. 김OO 연구원의 소속 기관인 대학에 설치된 IRB의 규정 등에 따라,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를 수행할 당시 IRB 심의 대상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질의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만약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면,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상적인 절차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연구자가 자가 실험의 준비 단계에서 소속 대학에 설치된 IRB에 문의하여 심의대상 여부 혹은 심의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IRB의 가이드에 따라 심의 프로세스를 사전에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수행 당시에는 IRB의 심의 결과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출판하는 것이다.

4.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사항은 인간대상 연구에서 자가 실험은 권장하는 연구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가 실험의 경우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는데,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를 분리하여 실험하는 것이 연구 데이터의 왜곡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피험자 보호 등이 자의적으로 진행될 경우 보호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가 실험을 선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IRB 심의용 연구계획서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OO 연구원의 경우 IRB 심의 없이 학술지 논문의 출판까지 이미 종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학위논문으로의 작성 전에 소속 대학의 IRB에 문의하여 자가 실험 데이터의 재사용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고, 학위논문의 작성 방향이나 구성 방법 등에서도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37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15-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 41.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9.

QUESTION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IRB 심의를 마치고 수행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자료 분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차 자료 분석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동의서 확보 및 재사용 관련 IRB 심의가 필요한가?

ANSWER

IRB 심의를 진행 할 때에, 연구자에게 이미 수집된 자료의 분석(기존 자료의 2차 분석)만 하는 연구인지, 이미 수집된 자료에 더해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하여 분석하는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새로이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이미 수집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분석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IRB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

IRB 심의 시 2차 자료 분석 및 연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이후에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속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 중 개인 정보 보호 및 피험자 보호 사항 등과 관련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16–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55–57.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1.

QUESTION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윤리법 내 기관위원회(IRB) 심의면제 대상이 되는 연구는 무엇이 있는가?

ANSWER

일반적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심의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그 자료에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처음부터 익명으로 보관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윤리법 상 인간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라고 할지라도, 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36조 제2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인간대상 연구
법 제15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 연구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이거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 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 중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덕목에 따른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인체유래물 연구

법 제36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체유래물 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3조(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 연구)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1. 연구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 · 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 · 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 · 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36조, 제37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16-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55-57.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2.

QUESTION 128

대학 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대학 병원 소속 전임의가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 심리척도 연구를 진행할 때, IRB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또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ANSWER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인 대학 병원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과 수집하는 개인 정보 등에 따른 심의내용 및 절차에 따른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위의 설명과 같이 연구의 발주처나 연구 성과의 출판 기관이 아닌 연구자의 소속 기관인 대학 병원에 설치된 IRB에서 해당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외부 기관에서의 심의를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가지고 소속 기관에서의 재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소속 대학 병원의 IRB를 통해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15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16-17.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55-57.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4.

QUESTION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석사 학위논문 연구에서 설문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ANSWER

생명윤리법에서의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심의대상에 석사학위 논문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기관별 IRB의 운영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문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설문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박사학위 논문과는 달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대체로 생명윤리법에서 말하는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또 반드시 IRB 심의를 받지 않고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 아래 인간대상 연구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그렇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외의 학술지가 IRB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IRB 심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이유로 IRB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해도 연구 과정 중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 개인 정보를 통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익명화 처리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5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20-26.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33-35.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6.

QUESTION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임상의학 연구 논문에서 선물저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부당한 저자표시(선물저자) 혐의의 입증과 관련하여 IRB 심의 신청서에 기입한 공동 연구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IRB 신청서에 공동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가?

ANSWER

-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IRB 신청서에 반드시 공동연구자로 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관별 IRB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보통 IRB 신청서 상에 참여 연구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 사례와 같이 연구 계획단계부터 본 연구에서의 역할과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수행 중에 연구 계획이나 수행 방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참여진이 변경될 수 있을 뿐더러 변경된 연구에 따라 저자 또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연구 참여자의 역할 또는 저자의 업적 배분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다면 모든 저자의 동의를 얻고, 기록으로 변경 사항을 남겨 오해의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IRB에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등록된 연구자라 하는 것은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간접 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비록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면 저자 자격을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8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27-2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24-26.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4.

QUESTION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생명윤리법 확대 시행 이전 논문 및 심의 면제 대상 논문에 대한 해외 저널의 IRB 심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NSWER

생명윤리법의 확대 시행 이전이라도 해외 학술 저널에 논문을 싣고자 했다면 소속 대학 IRB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KAIRB와 같은 공용 IRB의 심의 진행 후 연구를 수행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미처 IRB 심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당시 국내에서의 IRB 심의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였다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심의 면제 대상 연구의 경우에도 생명윤리법 확대 시행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연구자가 판단했을 때 자신의 연구가 심의 면제 대상이라고 해도 반드시 소속 IRB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면제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소속 IRB가 없을 때에는 기관 외부의 공용 IRB를 통해 심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인간대상 및 인체유체물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 사전에 IRB 심의를 반드시 받고 심의받은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에 심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외 학술지에서 IRB 심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때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IRB 심의 문제로 인한 논문의 출판이 중단되는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27–2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24–26.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5.

QUESTION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아동 복지법에서는 성년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참가자 동의서에 관한 부분에서는 성년의 나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동의에 대한 내용과 동의서가 적용되는 성년의 나이가 만 18세라는 것이 표기된 공인된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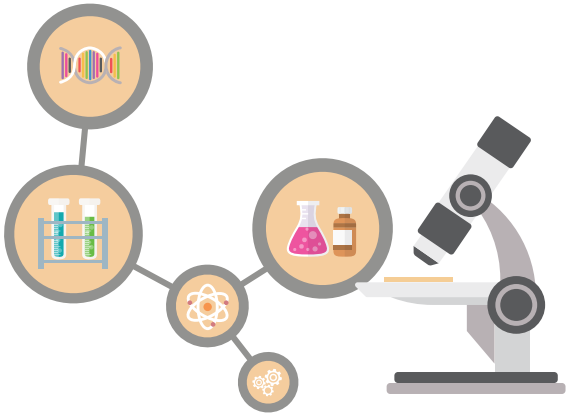
2013년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자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기타 IR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연구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일 경우, 연구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되어 있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18세 미만의 사람인 미성년자로서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아동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아동복지법,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3조 1항).

IRB 승인을 받아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연구 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해도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가 있지만, 아동에 대한 대리인의 서명 동의는 면제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부모)과 연구 참여자인 아동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아동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는가? 여기서 승낙(assent)이 필요하다. 즉, 승낙은 아동 본인이 해당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동의(consent)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승낙하지 않으면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아동의 연구 참여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승낙과 부모의 승인(permission)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어린 아동은 판단 능력이 전혀 없거나 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상당한 의료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때는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정확한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함으로써 대리권자의 서면동의와 함께 본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아동의 견해 표명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아동의 인지 기능 발달을 감안해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연구 대상자가 서면동의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위험하게 될 소지가 없다면 서면동의에 얽매이지 말고 연구자와 IRB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 아동복지법(2016. 3. 22), 제2조.
- 사단법인 대학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 39.

QUESTION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공식적으로는 저희 학교에 정식 IRB는 아니지만 연구윤리위원회가 2013년도 3월에 생겼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구를 2013년 5월에 개시를 했어요! 종합 학교가 아니라 IRB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학교 내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2013년 3월에 만들어진 이후로 학교 측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바로 공지를 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제가 연구 개시를 한 것은 2013년 5월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진 2개월 후이기 때문에 그때 실험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2013년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자신이 속한 기관 내에 IRB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인간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도 그것은 적법한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IRB 승인을 받아 수행된 연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면 그 데이터의 사용은 인정받을 수 없다. 만일 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IRB가 연구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15조, 제16조.
- 사단법인 대학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62-65.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20-29.

QUESTION 134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연구윤리 궁금합니다. 이번 학기에 학교에 임용이 되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 수업 중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수업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 검증을 하고 싶은데 제 수업에서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ANSWER

인간 대상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informed consent)를 주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를 정상인보다 더욱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취약성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시행 규칙에 의하면,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란 "임상 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할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약학대학 · 치과대학 · 간호대학 학생, 의료기관 · 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피험자를 말한다.

연구 대상자는 연구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때 어떠한 장애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연구자인 교수의 연구 참여 요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즉, 강요나 뭔가 불이익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연구를 수행한다면, 프로그램 적용 후 효과 검증 연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8조.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 26.
- 사단법인 대학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36-38.

QUESTION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를 할 시 IRB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있는 인터뷰 자료(예컨대 신문기사나 회고록,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청 자료 등)를 인용할 때에도 IRB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ANSWER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가 속한다.

즉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 대상자의 행동 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연구 대상자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그런데 인간 대상 연구에서 심의 면제가 되는 경우는 취약한 연구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연구 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 · 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3)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 기록하지 않는 연구 4) 연구 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질문처럼, 신문기사나 회고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구 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에 해당되므로 IRB 심의 면제 대상이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8조.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55–57.
- 사단법인 대학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30–34.

QUESTION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의 차이가 용인 가능할까요? enroll number가 조금 차이가 나거나 공동연구 참여기관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연구 자체의 사실이 변동되지 않으니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연구계획에서 다소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연구 결과라면 그것이 최초의 연구 계획과 상이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구 도중에 당초의 연구 계획에서 변경이 불가피하였지만, 이를 IRB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면, 데이터의 진실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문제가 된다.

IRB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구과제의 모든 변경은 시행되기 이전에 IRB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초 승인 받은 내용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연구대상자에게 영향을 줄만한 사안이라면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규심의나 신속심의의 방법을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각한 사안이 아니어서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운영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보고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8조.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81–83.

QUESTION 137

추가적인 IRB 승인 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IRB 승인을 받고 논문 1편을 게재한 이후에 추가적인 IRB 승인 없이 기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1~2편 더 출판하면 연구윤리 위반이 되나요?
첫 IRB 승인을 큰 카테고리로 선정해서(예, 자궁암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유전적 특성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추가적인 IRB 승인 없이 처음에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각각의 subtype 내지 유전자 검사 결과 별로 논문을 다수 출판하게 되면 연구윤리 위반 사항인가요? 꼭 매번 유전자 종류별로 또는 세포 subtype 별로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 이미 IRB 승인을 받아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을 발표한 후, 또 다른 연구 논문을 쓸 때, 이미 승인받은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판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후속 연구 논문에서 활용되는 연구 데이터가 이전에 승인받은 IRB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승인을 받은 후 활용해야 문제가 없다.

근거 및 참고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p. 81–83.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p. 18–19.

QUESTION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재 대학원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의 화장실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유아들에게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궁금한 것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살펴보기에 유아들의 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 윤리적으로 많은 장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참여 관찰로 교육기관의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를 비출 때는 유아들의 가슴 윗부분만 나오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학부모 동의서, 기관장 동의서 등)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유아들의 대화와 표정들을 살펴보기 위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연구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ANSWER

전형적인 인간 대상 연구이므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CCTV를 통한 촬영을 하므로 개인식별 정보가 수집되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심의 면제 대상은 아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CCTV 설치를 통한 연구의 허가도 있어야 한다. 아동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최소한 구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2015. 12. 29 일부 개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SBR-IRB 위원 매뉴얼』, 2015, p. 39.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IRB 입문과정 기본교재』, 2016, p. 65.

기 획 · 진 행 **이상엽**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정진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조성실장
강병옥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장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책임연구원

연 구 · 집 필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인 쇄 일 2016년 11월 30일

발 행 일 2016년 11월 30일

발 행 처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대전청사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114, Fax. 042-869-6777
서울청사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519

자료관련 문의처 학술기반진흥팀 이민호 (Tel. 042-869-6382)

디 자 인 · 인 쇄 세종디자인기획인쇄 (Tel. 042-633-3227)

[비매품] 본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및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전자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969000-4-7